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422-14

<http://www.mafra.go.kr>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2014. 3.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목 차

I.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1
1.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3
2.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별표	3
3.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	7
4.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10
II.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181
III.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195
IV.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205
V. 소비자분쟁해결기준(농업용기계)	213

I .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1.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개 정 연 혁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p>制定 1978.12. 5 法律 第3120號 他法改正 1990. 4. 7 法律 第4228號 他法改正 1993. 6.11 法律 第4561號 全部改正 1994.11.11 法律 第4788號 他法改正 1995. 1. 5 法律 第4861號 他法改正 1996. 8. 8 法律 第5153號 他法改正 1997.12.13 法律 第5,453號 및 5454號 他法改正 1999. 2. 5 法律 第5759號 改正 1999. 3.31 法律 第5951號 타법개정 2005.12.29 法律 第7775號 타법개정 2008.2.29 法律 第8852號 타법개정 2008.12.29 法律 第9276號 개정 2009. 4. 1 法律 第9621號 타법개정 2009.5.27 法律 第9717號 개정 2011. 7. 14 法律 第10834號 개정 2011. 11. 22 法律 第11095號 개정 2012. 5. 23 法律 第11428號 타법개정 2013.3.23 法律 第11690號 개정 2013. 6. 12 法律 第11876號</p>	<p>제정 1979.11.17 대통령령 제 9662호 타법개정 1984. 2.29 대통령령 제11372호 타법개정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타법개정 1990.12.18 대통령령 제13184호 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5호 전부개정 1995. 5.12 대통령령 제14645호 타법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1999. 6.30 대통령령 제16445호 타법개정 2000. 3.24 대통령령 제16445호 타법개정 2000.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 2004.11.18 대통령령 제18591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9. 3 대통령령 제21712호 개정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2호 개정 2011. 11. 7 대통령령 제23290호 개정 2012. 11. 12 대통령령 제24171호 타법개정 2013.3.23 대통령령 제24455호 개정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90호</p>	<p>제정 1980. 2. 7 농수산부령 제784호 개정 1980. 6.26 농수산부령 제792호 개정 1984.11.28 농수산부령 제792호 개정 1985. 2.18 농수산부령 제926호 전부개정 1989. 2.15 농림수산부령 제1014호 타법개정 1990.12.31 농림수산부령 제1060호 전문개정 1995. 5.12 농림수산부령 제1187호 개정 1996.12.28 농림부령 제1246호 개정 1999. 1. 5 농림부령 제1304호 개정 1999. 5. 24 농림부령 제1332호 개정 1999. 8. 9 농림부령 제1336호 타법개정 2004. 1.29 농림부령 제1454호 개정 2004.11.18 농림부령 제1482호 타법개정 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타법개정 2008.10.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호 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개정 2009.9.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2호 개정 2010.7.9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0호 개정 2011.12.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9호 개정 2012.3.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3호 개정 2012.11.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1호 개정 2014.3.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호</p>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목 적 13	제1조 목 적 13	제1조 목 적 13
제2조 정 의 13	제2조 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13	제1조의2 농업기계의 범위 13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의무 15	제3조 자금 지원 등 15	
제4조 자금 지원 15	제3조의2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16	
제5조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16		
제6조 시행계획 17	제3조의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 19	
제6조의2 수요조사 등 18	제3조의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제6조의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19	제3조의5 위원의 수당 등 22	
	제3조의6 운영세칙 22	
제7조 신기술 농업기계 23	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 23	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 23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 공동이용 26 제8조의2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26 제8조의3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27 제8조의4 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 28 제8조의5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 운영 30 제9조 농업기계의 검정 32	제5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 24 제6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25 제7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30	제2조의2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26 제2조의3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27 제2조의4 농업기계의 구매 등 28 제2조의5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 기준 등 30 제3조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32 제3조의2 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35 제4조 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36 제5조 검정재료 등의 요구 38 제6조 검정 결과의 처리 등 38 제7조 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41 제8조 검정의 생략 41 제9조 (삭제) 42 제10조 (삭제) 42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0조 검정의 무효·취소 등 45 제11조 사후관리 등 46 제12조 안전관리 49		제11조 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42 제12조 명의 등 변경신고 43 제13조 사후검정 등 44 제14조 이의신청 44 제15조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 기준 45 제16조 사후관리 46 제17조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48 제18조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48 제18조의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 49 제18조의3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49 제18조의4 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50 제18조의5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 등 50 제18조의6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51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의2 안전교육 56</p> <p>제12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57</p> <p>제12조의4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61</p> <p>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62</p> <p>제13조의2 해외진출의 지원 63</p>	<p>제8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62</p>	<p>제18조의7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52</p> <p>제18조의8 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53</p> <p>제18조의9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54</p> <p>제18조의10 준용규정 55</p> <p>제18조의11 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55</p> <p>제19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 ... 56</p> <p>제19조의2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 57</p> <p>제19조의3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등 57</p> <p>제19조의4 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 60</p> <p>제19조의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 행시 준수사항 60</p> <p>제19조의6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61</p>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4조 청 문 63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3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63	
제1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65		
제17조 (삭제) 65		
제18조 과태료 65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65	제20조 (삭제) 65
부칙 67	부칙 67	부칙 67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p>	<p>제2조(생산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라.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p> <p>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p>	<p>농림축산물의 건조·선별·분리·세척·살균·냉각·저장·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 제거·분쇄·도정(搗精)·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p> <p>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확인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 (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p>제3조의2(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 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p> <p>4.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p> <p>5.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 획을 세우면 그 내용을 고시(告示) 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p> <p>제6조(시행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필요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⑤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6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①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p>제3조의3(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p> <p>1.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2.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p>한다.</p> <p>④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⑧ 심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제3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p> <p>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추천하는 사람</p> <p>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p>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p> <p>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p> <p>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p> <p>제3조의5(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7조(신기술 농업기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기술의 이용에 적합한 농업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消化改良)으로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p>	<p>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p> <p>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p>②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5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p> <p>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6조(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공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임대사업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p>	<p>에 따른 공공기관</p> <p>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p> <p>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p>	<p>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8조의3(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p>		<p>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농업인 2.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p>제2조의3(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설 전시장 등 시설물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1. 중고 농업기계의 거래가격, 수요 및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p> <p>2. 중고 농업기계의 상설 전시 및 매매</p> <p>3.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 실태조사</p> <p>4. 그 밖에 중고 농업기계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삭제</p> <p>③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의4(농업기계의 구매와 임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하 “원</p>		<p>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매장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센터는 판매한 중고농업기계에 대해 그 판매한 날부터 1개월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조의4(농업기계의 구매 등) ①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임대하는 농</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농업기계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고, 원소유자에게 우선하여 임대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구매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p>②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8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보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임대사업단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보관소의 면적, 설비 및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p>제2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p> <p>③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유통업체(이하 “임대사업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자격을 취득한 사람</p> <p>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p> <p>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p> <p>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p> <p>④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9조(농업기계의 검정) ①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삭제</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농업기계</p>		<p>업기계의 매입·운반·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p> <p>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이하 “이사장”이라 하며,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대하여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농업기계에 대하여 사후검정을 할 수 있다.</p> <p>④ 농업기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이나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에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⑤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종류·신청·기준·방법과 검정 용도의 제품 처리, 검정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圃場) 또는 현장(現場)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p> <p>1. 종합검정, 안전검정: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라목은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의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나. 농업기계의 외관도 1부 다. 사용설명서 1부 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개별차량용 원동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배출가스 인증서 사본 1부</p> <p>2. 국제규범검정, 기술지도검정: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p> <p>3. 변경검정: 변경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1부</p> <p>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p> <p>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p> <p>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p> <p>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p> <p>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p> <p>5. 이미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에 대해 검정을 신청한 경우</p> <p>6. 정상적인 검정과정 중 검정 용도 제품의 파손, 이상 발생 등으로 검정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는 경우</p> <p>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p> <p>제3조의2(검정대상 농업기계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검정을 받아야 하는 농업기계는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업기계도 포함한다.</p> <p>② 별표 4에 따른 종합검정 대상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장비의 능력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초과하는 대형 농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은 국제 규격, 지역 규격 또는 단체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와 성능 등의 검정항목에 대한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종합검정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필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변경검정: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p> <p>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의적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는 제1항 각 호의 검정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2.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정의 검정기준과 검정의 세부기준으로서의 구조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고, 그 밖의 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여 공포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은 신청인과 이사장이 협의하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한다.</p> <p>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은 별표 7과 같고, 그 밖에 사후검정의 방법 및 절차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이사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농촌진흥청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5와 별표 6에서 검정기준과 구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 이사장이 검정기준과 구조기준 등을 정하여 공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p> <p>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p> <p>③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형식의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별표 8에 따른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p> <p>⑤ 이사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p> <p>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이사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검정을 중지하고 부적합 처리를 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30일 이내에 찾아갈 것과 해당 기간 내에 제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의 제품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함께 알려야 한다.</p> <p>제8조(검정의 생략) 이사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p> <p>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p> <p>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지역규격 또는 단체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p> <p>제9조 삭제</p> <p>제10조 삭제</p> <p>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확인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p> <p>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본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3일(영문성적서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p> <p>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 또는 검정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하여 이사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13조(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직원을 관계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4조(이의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0조(검정의 무효·취소 등)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무효로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완을 지시하거나, 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p> <p>②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제16조(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p>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p> <p>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p> <p>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p>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안전관리) ①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이하 “안전관리 대상 농업기계”라 한다)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기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안전장치의 구조) 삭제</p>	<p>1. 별표 10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p> <p>2. 별표 10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p> <p>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11과 같다</p> <p>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을 안전장치 부착 확</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한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안전장치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改造)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p> <p>⑤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p> <p>⑥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p>		<p>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부착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용도의 제품을 부착 확인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p>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이사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p>

법 륵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는 조사 7일 전에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를 조사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의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한 농업기계의 소유자나 사용자에게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p> <p>⑨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안전장치 부착 확인 방법·절차,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변경의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12와 같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이사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별표 13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는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농업기계에는 별표 14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p> <p>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p> <p>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야 한다. 다만, 확인 용도의 제품을 구조 변경 확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구조 변경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 용도의 제품을 구조 변경 확인 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p> <p>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후의 설계도</p> <p>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이사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p> <p>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p> <p>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p> <p>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8조의10(준용규정) ①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p> <p>제18조의11(안전장치의 시정명령 등) 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의2(안전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9조(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등)</p> <p>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교육 대상자 : 농업용트랙터 등 농업용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 등 2.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 농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3일 이내의 범위에서 구조 및 조작취급성 등에 관한 교육 <p>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p>		<p>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검정의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이라 한다)을 갖출 것 <p>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검정업무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 검정대상 농업기계 <p>⑤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①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p>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p>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p>	<p>제8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p>	<p>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13조의2(해외진출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농업기계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2.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 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p>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p>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p>	<p>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 및 평가 1의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고시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 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법」 제14조의2 제1</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6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 의 검정 업무를 대행하는 검정대 행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 는 공무원으로 본다.</p> <p>제17조 삭제</p> <p>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p>	<p>항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p> <p>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의 검정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확인</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20조 삭제</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p> <p>1의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2.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농업기계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기계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또는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변경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안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착된 안전장치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p> <p>②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62조제1항 중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p>	<p>부 칙</p> <p>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및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 등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후검정의 기준·방법, 안전장치 부착여부, 안전장치 구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 조사에 대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 발령한 고시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령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 후 농업기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p>	<p>터 적용한다.</p> <p>③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④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입·제조를 시작하는 농업기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농업기계의 검정신청 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등에 대하여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고시는 제4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표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조(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 우선 선정의 적용례)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를 임대사업의 대상에게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2.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령 별표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10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농업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제2호바목의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500	750	1,000
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2	500	750	1,000
다.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그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2호	500	750	1,0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 구조의 개조 또는 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3호	500	750	1,000
마.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1호	25	50	100
바.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 2)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 3)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제2호		25 50 100	

3.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5] 농업기계 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6] 농업기계 구조기준(제4조제3항 관련)
- [별표 7]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 [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 [별표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 [별표11]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 [별표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제18조의5제2항 관련)
- [별표13]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18조의5제3항 관련)
- [별표14]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제18조의6제3항 관련)
- [별표1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8조의12 관련)
- [별표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의16 관련)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 위
1. 농업용 트랙터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및 작업기 승강장치를 갖추고 견인형, 장착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연결하여 경운(耕耘), 정지(整地), 운반 등 농작업(農作業)을 수행하는 엔진출력(규격·성능 설명서에 기재된 출력을 말한다) 15kW 이상인 승용자주식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농업용 콤바인	농경지에서 벼·보리·콩·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선별하는 장치가 부착된 승용자주식(乘用自走式) 수확기계
4. 동력이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식부(植付)장치 및 운전조작장치 등을 갖추고 모를 눈에 옮겨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승용자주식[부분경운형 및 멀칭겸용형을 포함한다] 또는 보행형 이앙기계
5. 동력이식기	농경지에서 배추, 고추, 담배, 인삼, 파, 양상추 등과 같은 밭작물 이식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식부장치, 구절(溝切)장치 및 복토장치를 갖춘 자주식 또는 부착형 이식기계
6. 농업용 난방기	<p>고체연료, 유류, 전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난방기계</p> <p>가. 고체연료 난방기: 다음의 고체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정격 난방능력 210MJ/h 이상인 온풍기(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석탄(구명탄, 무연탄, 갈탄, 코크스 등) 2) 목재 칩, 목재 브리켓 또는 목재 펠릿(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 3) 목분 4) 왕겨 또는 왕겨 펠릿

농업기계명	범 위
	<p>5) 가축분뇨 고형연료(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p> <p>6) 그 밖에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고체연료. 다만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높은 비닐, 플라스틱 칩 등은 제외한다.</p> <p>나. 유류 난방기: 등유, 경유, 부생연료유, 중유 등 유류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정격난방능력 210MJ/h이상의 난방기로서 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로 열교환기가 있는 온풍식 또는 온풍·온수 겸용식 난방기계</p> <p>다. 전기 난방기: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다음의 난방기</p> <p>1)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하는 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온풍식 또는 온수식 난방기계</p> <p>2) 천장·기둥·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고, 발열체로부터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증을 받은 난방기계</p> <p>라. 혼합열원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열원 중 두 가지 이상의 열원이 결합되어 동시 또는 순차(교대) 작동이 가능한 형태의 온풍기(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p> <p>마. 그 밖의 열원을 이용한 난방기: 기체 및 액화가스, 지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를 열원으로 하는 난방기계</p>
7. 농산물건조기	<p>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의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건조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냉장겸용식을 포함한다)</p> <p>가. 전기히터 또는 유류버너와 송풍장치를 가진 건조기</p> <p>나. 전기히터 또는 유류버너와 원적외선방사체를 가진 건조기</p> <p>다. 제습성능장치를 가진 냉풍식 건조기</p> <p>라. 히트펌프식 건조기</p> <p>마. 전기혼합식 건조기</p>
8. 농산물저온저장고	<p>농산물을 보관·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m³ 이하(바닥면적 10.56m²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기계</p>

농업기계명	범 위
9.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운반차	<p>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된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계</p> <p>가. 승용형 동력운반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 이상일 것 <p>나. 보행형 동력운반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 이상일 것
11. 농업용 로더(loader)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12. 농업용 굴삭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13. 관리기	<p>고랑·두둑 성형, 중경(中耕),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 피복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p> <p>가. 승용형 관리기: 탑재엔진의 최대출력이 15kW 미만이고 최고주행속도가 15km/h 이하이며, 최저 지상고(地上高)가 400mm 이상으로 설계된 2축 이상의 차축 또는 궤도를 가진 승용자주식 관리기계</p> <p>나. 보행형 관리기: 최대속도가 7km/h 이하이고 차축이 1개 이상인 보행자주식 관리기계(차축경운형을 포함한다)</p>

농업기계명	범 위
14. 비료살포기	<p>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p> <p>가. 자주형: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살포기계</p> <p>나. 부착형 또는 견인형: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p>
15. 곡물건조기	<p>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p> <p>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외한다)</p> <p>나. 상온통풍저장형 건조기</p>
16. 농업용 고소작업차 (과수용 작업대 포함)	<p>과수적과(열매 슈아내기), 가지치기 등의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대 및 아우트리거를 갖추고 2m 이상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자주형 작업차량(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을 이용하여 아우트리거 없이 2m 미만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과수용 작업대를 포함한다)</p>
17. 농업용 방제기	<p>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p> <p>가. 원거리용 방제기 대형 논 또는 밭 등의 노지에서 한 방향으로 약액을 분출하는 승용자주형, 견인형 또는 탑재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한다.</p> <p>나. 주행형 동력분무기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가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형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p> <p>다. 스피드스프레이어</p>

농업기계명	범 위
	<p>과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약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식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식의 경우에는 최고주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p> <p>라. 무인자동방제기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 고정경로를 이동하게 하거나 고정 설치하여 무인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방제기계</p> <p>마.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및 원격조정형 동력분무기</p>
18. 동력파쇄기	조사료(粗飼料), 목재 등을 파쇄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파쇄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목재를 사용하여 톱밥을 제조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의 톱밥 제조용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엔진, 또는 전동기 등의 동력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공급장치, 세척장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브리시, 세척통회전 또는 고압분무 등의 방식으로 채소류 및 과일류를 세척하는 기계
21. 동력예취기	주행장치, 전처리장치 및 예취(刈取)장치를 갖추고 왕복식, 로터리식, 플레일식 등의 방식으로 곡물 및 두류를 절단·수확하는 승용자주형 또는 보행형 방식의 예취기계
22. 동력제초기 [모우어(mower) 포함]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창고 등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작업대)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의 운반 및 적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적재기계
24. 트레일러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25.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묶는 자주식 또는 피견인식의 농업용 베일러(랩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농업기계명	범 위
26. 농산물 결속기(結束機)	화훼 또는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결속하는 것으로서 접착결속, 매듭결속, 꼬임결속, 포장결속 또는 과일봉지 결속 방식의 기계
27. 동력절단기	전동기,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칼날 등으로 농작물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단기계 가. 벧짚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bale)을 절단하는 결속벧짚 절단기계 나. 마늘 또는 양파를 선별·포장하기 위하여 줄기를 절단하는 줄기 절단기계 다. 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벧짚단, 청예옥수수 등을 절단하는 동력절단기계
28. 랩피복기	벧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
29. 동력수확기	감자, 마늘, 양파 등 땅속작물을 굴취 수확하거나, 엽채류를 절단 수확하거나,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용 트랙터·동력경운기 등 자주식 원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수확기계
30. 동력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원동기계. 다만,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농가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배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치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배합기계로서 배합기 형식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인 사료용 배합기계(발효용 및 화식사료용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보리, 호밀, 콩, 옥수수, 목초, 마늘, 감자 등의 종자를 재배지에 파종하는 목적으로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등을 갖춘 승용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파종기계[어린 묘(畝)생육을 위한 육묘용 파종기와 범씨를 직접 논에 파종할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또는 부착형 벼 직파기를 포함한다]

농업기계명	범 위
33. 사료급이기 (飼料給餌機)	가축 사육시설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급이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사료급이기 또는 정치(定置) 상태에서 급이가 가능한 정치식 사료급이기
34. 농산물제피기	농산물의 껍질을 칼날, 마찰판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춘 동력식 제피기계
35. 동력탈곡기	벼, 보리, 콩 등 수확작물 탈곡을 목적으로 공급장치, 탈곡장치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탈곡기: 자동탈곡기에 주행장치를 부착하여 포장(圃場)에서 이동시키면서 탈곡 작업을 하는 자주식 탈곡기계 나. 부착형 동력탈곡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 자주식 원동기에 부착하거나 엔진, 모터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탈곡기계
36. 농산물선별기	과일, 구근, 채소 등의 농산물을 물성과 품질에 따라 비중, 중량, 색, 당도, 형상 등으로 선별 분류하는 선별기계
37. 곡물적재함	벼, 보리 등 수확된 곡물을 농경지에서 저장·가공시설로 운반하기 위해 농업용 트랙터에 견인되어 사용되도록 제작된 일시 보관·운반장치
38. 부속작업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동력이앙기 등에 부착 또는 견인되어 사용되는 배토기(培土機), 로터베이터(rotavator), 플라우, 구굴기, 비닐피복(被覆)기 등 농작업 기계
39. 농업용 컨베이어	주로 전동기 또는 엔진동력원을 이용하여 농산물 등의 상하차 또는 적재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컨베이어로서 이송 및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작업이 가능한 운반기계
40. 계사용(鷄舍用) 동력청소기	닭 사육시설(계사) 바닥에 깔린 왕겨, 톱밥, 볏짚 등 위에 쌓여 있는 닭똥 및 깃털을 수거·운반·배출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주행장치, 수거장치, 적재설비를 갖춘 승용자주식 동력청소기계
41. 그 밖의 농업기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곡물건조기	8년
바. 그 밖의 수확조제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

[별표 3]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제2조의4제1항제2호 관련)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				
제 호				
① 농업기계명		② 형식명		③ 규격
④ 검정번호		⑤ 제조연월	년 월	
⑥ 공급회사(제조회사)				
⑦ 제조번호		⑧ 최초 구입일		
⑨ 원동기 형식명		⑩ 원동기 형식		
⑪ 변속기 종류	<input type="checkbox"/> 기계식 <input type="checkbox"/> 유압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⑫ 연료의 종류	
⑬ 사용시간(또는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시간(km)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작동불량	
⑭ 구조변경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⑮ 사고/침수 유무(단순수리 제외)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⑯ 구조변경 내역				
⑰ 주요장치	항목	상태	배 점	평 점
원동기	시동 및 작동상태	작동, 시동불량, 이상소음 등	5	
	회전 및 가속상태	속도변동, 이상소음, 회전수 등	5	
	배기가스 상태	백색, 흑색 등	5	
	냉각수 누수	냉각수 누수 및 정비상태 등	5	
	연료 누유	연료 누유 및 정비상태 등	5	
	오일 누유	오일 누유 및 정비상태 등	5	
동력전달장치	클러치	유격 및 작동상태 등	5	
	차동장치	유격 및 작동상태 등	5	
	변속기	유격 및 작동상태 등	5	
제동장치	제동장치	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	5	
전기장치	전장품	등화장치, 계기판, 모터 및 배터리 등	5	
조향장치	핸들	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	5	
	브레이크 상태	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	5	
	타이어 및 휠 상태	작동, 유격 및 이상소음 등	5	
유압장치	오일누유 및 정비	오일누유 및 정비상태 등	5	
	작동상태	유격 및 작동상태 등	5	
기타	외부관벨 상태	작동 및 이상상태 등	5	
	도색상태	도색상태 등	5	
	보안장비 상태	거울, 경음기 및 안전커버 등	5	
	관리상태	외부 작동상태 등	5	
계			100	

특기사항 및 조사자 의견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상태의 품질을 평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 담당자 (인 또는 서명)</p>	
<p>본인은 위와 같이 중고 농업기계의 품질평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판매자 (인)</p>	
<p>【작성 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점수: 매우양호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 검정번호: 농업기계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번호 ※ 제조번호: 농업기계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번호 ※ 최초구입일: 최초로 농업기계를 구입한 날짜. 중고 농업기계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을 말한다. 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최초 판매일로 한다. ※ 연료의 종류: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등 	

[별표 4]

검정대상 농업기계(제3조의2제1항 관련)

1. 종합검정

- 가. 농업용 트랙터
- 나.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 다. 농업용 콤파인
- 라. 동력이앙기(승용형)
- 마. 동력이식기
- 바. 농업용 난방기
- 사. 농산물건조기(유류형은 제외)
- 아. 농산물저온저장고
- 자. 가정용 도정기
- 차.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
- 카. 농업용 로더(전용형, 자체중량 2톤 미만)
- 타. 농업용 굴삭기(전용형, 자체중량 1톤 미만)
- 파. 관리기(승용형)
- 하.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
- 거.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
- 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2. 안전검정

- 가. 동력이앙기(보행형)
- 나.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 다. 곡물건조기
- 라. 농용고소작업차(과수용작업대 포함)
- 마. 벼 직파기(전용형)

- 바. 원거리용 방제기
- 사. 주행형 동력분무기(자주형 및 부착형)
 - 아. 동력파쇄기
 - 자. 농업용 톱밥제조기
 - 차. 비료살포기(승용자주형은 제외)
 - 카. 농산물세척기
 - 타. 농산물건조기(유류형)
 - 파. 동력예취기
 - 하. 동력제초기(모우어 포함)
 - 거. 농업용 리프트
 - 너. 트레일러(농업용트랙터 및 경운기용)
 - 더.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은 제외)
 - 리. 동력절단기
 - 머. 랩피복기
 - 버. 동력수확기
 - 서. 동력경운기
 - 어. 관리기(보행형)
 - 저. 스피드스프레이어
 - 처. 사료배합기
 - 커. 동력파종기(승용자주형)
 - 터. 사료급이기(飼料給餌機)
 - 퍼. 농산물제피기(農産物除皮機)(공기식은 제외)
 - 허. 동력탈곡기(주행형)
 - 고. 농업용 컨베이어
 - 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별표 5]

농업기계 검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농업용 트랙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 1) 각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누수 및 누유 등이 없을 것
- 2) 각 시험 중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3) PTO(동력취출축)성능시험 중 최대출력시험 시 평균 최대출력에 대한 각 측정값의 차는 $\pm 2\%$ 이내일 것
- 4) 견인성능시험 중 최대 견인출력은 PTO 최대출력의 70% 이상일 것(유체 동력 전달장치가 장비된 농업용 트랙터는 제외)
- 5) 방수시험 결과, 물의 유입이 없을 것
- 6) 운전석에서의 소음시험 중 7.5km/h에 가장 가까운 속도 단수에서의 최대소음 수준은 90dB(A) 이하일 것
- 7) 조향능력시험은 KS B ISO 10998(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조향 요구조건)의 제5항 및 제6항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것
- 8) 측정된 PTO 최대출력은 신청자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서 제시한 PTO 최대출력의 $\pm 5.0\%$ 이내 일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보호구조물 강도시험

- 가) 캡 또는 프레임이 안전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 나) 안전역이 캡 또는 프레임의 보호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 다) 수평부하시험에서 소요흡수에너지가 충족되는 지점에서의 힘은 $0.8F_{max}$ 이상일 것
- 라) 수평부하시험에서 과부하시험 기준을 충족할 것
- 마) 압괴시험 시 소요 압괴력은 유지될 것
- 바) 전도사고 시에 운전자에 중대한 장애를 줄 수 있는 돌출부 또는 예리한 부품(전도사고 시 변형에 의하여 돌출될 수 있는 부품도 포함)이 없을 것
- 사) 운전자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부분이 없을 것. 다만, 과부하 시험 중 탄성변형에 의한 부가적인 균열이나 찢어짐, 캡 또는 프레임의 안전역 침범이나 보호역 침범은 허용되지만 부하 제거 후 캡 또는 프레임은 안전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역은 보호구조물의 보호역 내에 있어야 한다.

2) 좌석벨트 고정장치 강도시험

- 가) 강도 시험 시 좌석벨트 관련 부품의 영구변형은 허용됨. 다만 강도 시험 도중 파손으로 인하여 좌석벨트 시스템, 좌석 조합 또는 좌석 조정 잠금 장치 등이 해제되어서는 안 된다.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3. 농업용 콤바인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 능률시험

가) 자탈형

- (1) 예취높이는 각각 10cm 이하일 것
- (2) 손상립비는 1% 이하일 것
- (3)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나) 보통형

- (1) 예취높이는 보리와 콩은 10cm 이하, 유채는 20cm 이하일 것
- (2) 손상립비는 보리 1% 이하, 콩 2% 이하일 것
- (3)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2) 작업정도 시험

가) 자탈형

- (1) 곡립손실립비는 2% 이하일 것
- (2) 곡립구중의 손상립비는 1% 이하일 것
- (3) 곡립구중의 협잡물비는 1% 이하일 것
- (4) 예취높이는 각각 10cm 이내일 것
- (5) 직진성이 양호할 것

나) 보통형

- (1) 곡립손실립비는 보리 2% 이하, 콩 5% 이하, 유채 10% 이하일 것
- (2) 곡립구중의 손상립비는 보리 1% 이하, 콩 2% 이하일 것
- (3) 곡립구중의 협잡물비는 보리 1% 이하, 콩과 유채는 3% 이하일 것
- (4) 곡립구중 미탈부립비는 1% 이하일 것
- (5) 예취높이는 각각 10cm 이내일 것

3) 입모각 적응시험

공시작물의 예취가 가능할 것

4) 전처리부 승강장치시험

가) 전처리부의 승강상태가 양호할 것

나) 기름누설이 없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안정성이 있을 것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4. 동력이앙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성능시험

가) 전결주율은 5% 이하일 것

나) 식부상태가 양호할 것

다) 멀칭지는 접힌 상태가 없고 진압상태가 양호하며 찢김이 없을 것(멀칭이 양에 한함)

라) 작업 시 시비상태가 양호할 것(측조시비기에 한함)

마) 설정시비량과 시비량과의 차는 $\pm 8\%$ 이내일 것

2) 주행시험(부착형 제외)

가) 직진성이 양호할 것

나) 선회성이 양호할 것

3) 연속운전시험

- 가) 운전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기름누설, 물누설, 가스누설이 없을 것
- 다) 각 부의 조립상태가 양호할 것

4) 방수시험

- 가) 물의 유입이 없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 4) 공시기의 탈착이 용이할 것(부착형에 한함)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5. 동력이식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능률시험

- 가) 전결주율이 3% 이하일 것
- 나) 기계로 인한 손상률은 2% 이하일 것
- 다) 주간의 편차는 20% 이하, 조간의 편차는 10% 이하일 것
- 라) 운전이 원활하고 식부상태가 양호할 것
- 마) 작업 시 물 공급상태가 양호할 것(물 공급장치 부착 기대에 한함)

2) 연속운전시험

- 가) 운전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기름누설, 물누설, 가스누설이 없을 것

다) 각 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다. 조작성 난이도시험

-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 4) 최대경사각에서 운전이 원활하고 식부상태가 양호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6. 농업용 난방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

가) 난방성능시험

- (1) 공시기 작동 시 이상소음, 이상진동, 접속부의 헐거움 등 이상이 없을 것
- (2) 난방능력 측정 시 온풍 또는 온수의 온도분포가 안정적인 것
- (3) 열효율은 60% 이상일 것(축분용 난방기 제외). 단, 연료가 목재펠릿 또는 목분인 온수식 보일러는 80%, 온풍식은 70% 이상일 것
- (4) 이상과열 감지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5) 연소상태가 양호하고, 연통으로 정상가동중 매연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며, 불씨 및 분진 발생이 없을 것
- (6)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송풍기 부착기종에 한함).
- (7) 공시기의 기밀부는 연소가스의 누설 및 불씨 발생이 없을 것
- (8) 온풍식의 경우 난방성능시험 시 덕트접속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가 100℃ 이하일 것

2) 농업용 유류온풍난방기

가) 난방성능시험

- (1) 환기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 접속부의 헐거움 및 벨트의 이상한 흔들림이 없을 것
- (2) 난방작동 시 작동의 불안정, 이상소음, 진동 및 접속불량이 없을 것
- (3) 온풍온도 과열방지 장치가 이상 없이 작동할 것
- (4) 연소 시 점화가 확실하게 되고, 불꽃이 균일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 (5) 연소 시 진동, 연소 및 미연소 기름이 연소실에 부착하는 징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6) 매연농도는 스모크 스케일로 경유 및 등유 4 이하, 중유 6 이하일 것
- (7) 연통 내 배기가스 측정온도와 배기가스 측정 시 실온의 차가 300℃ 이하일 것
- (8) 열효율은 80% 이상일 것
- (9) 기름누설이 없을 것
- (10) 난방성능시험 시 덕트접속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가 100℃ 이하일 것

나) 연소부 기밀시험

- (1) 연소실과 열교환기의 각 용접부 등에 누수가 없을 것

다) 과부하(과온) 연속운전시험

- (1) 시험 중 이상연소 및 이상소음, 진동, 발열 등이 없을 것
- (2) 각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3)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

가) 난방성능시험

- (1) 난방작동 시 작동의 불안정, 이상소음, 진동 및 접속불량이 없을 것
- (2) 에너지 이용효율은 90% 이상일 것
- (3) 난방성능시험 시 덕트접속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가 100℃ 이하일 것

나) 과부하연속운전시험

-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을 것
- (2) 각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 (3) 발열체, 전동기 등의 파손이 없을 것

4)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

가) 난방성능시험

- (1) 온풍식의 경우 난방성능시험 시 덕트접속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의 차이가 100℃ 이하일 것

(가) 전기용

- 난방작동 시 작동의 불안정, 이상소음, 진동 및 접속불량이 없을 것
- 에너지 이용효율은 90% 이상일 것

(나) 액체연료용

- 환기작동 시 이상소음, 진동, 접속부의 헐거움 및 벨트의 이상한 흔들림이 없을 것
- 난방작동 시 작동의 불안정, 이상소음, 진동 및 접속불량이 없을 것
- 온풍온도 과열방지 장치가 이상 없이 작동할 것
- 연소 시 점화가 확실하게 되고, 불꽃이 균일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
- 연소 시 진동, 연소 및 미연소 액체연료가 연소실에 부착하는 징후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연통 내 배기가스 측정온도와 배기가스 측정 시 실온과의 차가 300℃ 이하일 것
- 열효율은 80% 이상일 것
- 액체연료 누설이 없을 것

(다) 고체연료용

- 공시기 작동 시 이상소음, 이상진동, 접속부의 헐거움 등 이상이 없을 것

- 정격 난방능력 측정 시 온풍 또는 온수의 온도분포가 안정적인 것
- 열효율은 60% 이상일 것(축분용 난방기 제외). 단, 목재펠렛의 온수식 보일러는 80%, 온풍식은 70% 이상일 것
- 이상과열 감지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연소상태가 양호하고, 연통으로 정상가동중 매연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며, 불씨 및 분진 발생이 없을 것
- 공시기의 기밀부는 연소가스의 누설 및 불씨발생이 없을 것

나) 과부하연속운전시험(전기용에 한함)

-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이상발열 등이 없을 것
- (2) 각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 (3) 발열체, 전동기 등의 파손이 없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 시험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연료공급이 용이할 것
- 3) 정비, 점검이 용이할 것
- 4) 연료공급 및 연소 후 재의 처리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7. 농산물건조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건조성능시험

가) 건조 후 전·후, 좌·우 각 열의 상·중·하층 간 함수율 차는 6% w.b. 이내일 것(선반식 건조기에 한함)

나) 건조 중 이상온도 변화가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다) 건조 후 공시재료의 표면이 검은색 또는 갈색 등으로 이상 변색된 것은 0.5% 이하일 것
- 라) 건감률은 1.8% w.b./h 이상일 것(일담배용 공시기는 제외)
- 2) 건조온도조절시험
 - 가) 온도변화폭이 5℃ 이내일 것
 - 나) 설정온도와 측정평균온도와의 차는 ±4℃ 이내일 것
- 3) (삭 제)
- 4) 냉장검용식은 다음의 저온저장능력이 있을 것
 - 가) 저장고 보냉 성능시험
 - (1) 보냉 성능은 $0.698\text{W}/\text{m}^2 \cdot \text{℃}$ 이하일 것
 - (2)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 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3)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 나) 저장실 온습도 조절시험
 -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 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2)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 (3) 온습도조절 시험 동안 각 측정점별 습도 평균값이 70% 이상일 것
 - (4) 냉각소요시간이 5일(120시간) 이내일 것
 - (5) 온도안정 후 설정온도와 저장고내의 각 측정점별 온도 평균값과의 편차가 1℃ 이내일 것
 - (6) 온도안정 후 저장고내의 각 측정점별 최고, 최저 온도 값의 차가 2℃ 이내일 것
 - (7) 제상히터 작동 시 설정온도와 저장고내의 각 측정점별 온도 평균값과의 편차가 3℃ 이내일 것
 - (8) 제상히터 작동 시 저장고내의 각 측정점별 최고, 최저 온도 값의 차가 5℃ 이내일 것
 - (9) 영하 15℃ 외기조건에서 저장고내의 온도를 1℃로 설정하였을 경우 24

시간 동안 최대 $\pm 1^{\circ}\text{C}$ 이내에서 온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를 70%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단, 제상하는 시간 제외)

다) 제상히터 작동상태 조사

-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 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2) 제상히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 (3)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다. 조작성 난이도시험

-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8. 농산물저온저장고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50m^3 이하

가) 저장고 보냉 성능시험

- (1) 보냉성능은 $0.47\text{W}/\text{m}^2 \cdot ^{\circ}\text{C}$ 이하일 것
- (2)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3)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나) 냉각성능시험

-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2)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 (3) 냉각소요시간이 3일(72시간) 이내일 것

다)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 (1)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설정온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도 평균값과의 편차는 $\pm 1^{\circ}\text{C}$ 이내이고, 각 측정점별 습도 평균값은 고습도용은 85%R.H. 이상, 저습도용은 75%R.H. 이하일 것
- (2)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2°C , 습도는 10%R.H. 이내일 것
- (3) 제상히터 작동 시 설정온습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과의 편차가 온도는 $\pm 3^{\circ}\text{C}$ 이내, 습도는 $\pm 10\%$ R.H. 이내일 것
- (4) 제상히터 작동 시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5°C , 습도는 20%R.H. 이내일 것

2) 50m^3 초과

가) 단열성능

- (1) 단열시험에서 측정된 열통과율이 $0.24\text{W}/\text{m}^2 \cdot ^{\circ}\text{C}$ 이하일 것

나)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 (1) 측정된 각 지점별 온도의 표준편차가 1°C 이내일 것
- (2) 설정온도와 측정된 평균온도의 차이가 $\pm 0.5^{\circ}\text{C}$ 이내일 것
- (3) 기준 상대습도(고습도용 90%, 저습도용 70%)와 측정된 평균상대습도의 차이가 $\pm 5\%$ 이내일 것

다) 제상 성능시험

- (1) 서리제거 중에 측정된 평균온도와 농산물 저온저장고 내 설정온도의 차이가 3°C 이내일 것
- (2) 서리제거 직후 증발기를 육안 검사하여 서리나 얼음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일 것

다. 조작의 난이도 시험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정비점검이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9. 가정용 도정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 1) 미 탈부율(%): 제현 시 미탈부된 벼의 양이 무게비로 1.0% 이내일 것
- 2) 도정수율(%): 벼를 백미로 가공 시 도정수율은 72.0% 이상일 것
- 3) 찌라기증가율(%): 벼를 백미로 가공 시 찌라기증가율은 10.0% 이내 일 것
- 4) 유실곡 비율(%): 벼를 백미로 가공 시 유실곡비율은 0.05% 이내 일 것
- 5) 도정도: 벼를 백미로 가공 시 도정도는 10분도 이상 가공이 가능할 것

다. 조작성 난이도시험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및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0. 농업용 동력운반차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 1) 주행시험
 - 가) 최고 주행속도는 30km/h 이내일 것
 - 나) 직진성이 양호할 것
 - 다) 선회성이 양호할 것
- 2) 유압덤프 승강시험
 - 가) 유압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
 - 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3) 적재함 들어올림 시험

- 가) 적재함 들어올림 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유압장치 등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 나) 적재함 하강량은 100mm 미만일 것

4) 브레이크시험

- 가) 정차브레이크의 조작이 용이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나) 주차브레이크는 공시기의 전후 어느 방향에서나 정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5) 연속운전시험

- 가) 이상소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나) 기름누설이 없을 것
- 다)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 라) 1회 충전으로 3시간 이상이고 25km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전동기식에 한함)

6) 등판능력이 있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1. 농업용 로더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성능시험

가) 작업이 원활할 것

2) 주행시험

나) 선회성이 양호할 것

3) 브레이크 성능시험

가)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주차브레이크는 밀림이 없을 것

4) 붐 및 버킷 인양력시험

가) 버킷에 규격 및 성능설명서에 제시한 최대인양하중을 싣고 원활하게 들어올릴 수 있을 것

나) 유압장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5) 유압실린더 변위량시험

가) 각 실린더의 변위량은 20mm 이내일 것

나) 유압실린더에 이상이 없을 것

6) 안정도시험

가) 전도되지 않을 것

다. 조작성 난이도시험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안정성이 있을 것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4) 공시기의 탈착이 용이할 것(부착형에 한함)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2. 농업용 굴삭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버킷실린더에 의한 최대굴삭력 시험

가) 유압실린더의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을 것

2) 암실린더에 의한 최대굴삭력 시험

가) 유압실린더의 작동이 원활하고 이상이 없을 것

3) 유압실린더 변위량 시험

가) 각 실린더의 변위량은 20mm 이하일 것

나) 유압실린더에 이상이 없을 것

4) 브레이크 성능시험(전용형 바퀴식에 의함)

가) 정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나) 주차브레이크는 밀림이 없을 것

5) 주행시험(전용형에 한함)

가) 선회성이 양호할 것

6) 굴삭작업시험

가) 굴삭상태가 양호할 것

나) 버킷의 흠토출상태가 양호할 것

다) 이상소음, 이상발열, 이상진동 등이 없고 연소상태가 양호할 것

라) 가스누설, 기름누설, 물누설, 전기누전이 없을 것

마) 각 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7) 등판시험

가) 등판능력이 있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 4) 공시기의 탈착이 용이할 것(부착형에 한함)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3. 관리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기 승강성능 시험 장치

가) 작업기 승강장치는 전수직 이동거리에서 작동상태가 원활할 것

나) 유압장치에서 기름 누설이 되지 않을 것

2) 주행시험

가) 직진성이 양호할 것

나) 선회성이 양호할 것

3) 브레이크 성능시험

가) 정차브레이크의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주차브레이크는 공시기의 전후 어느 방향이나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동 상태가 양호할 것

4) 방수시험

가) 물의 유입이 없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시험

1) 각 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안정성이 있을 것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4. 비료살포기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성능시험

가) 살포량은 각 조절단수별로 측정한 값이 평균 살포량의 $\pm 10\%$ 이내일 것

나) 살포상태는 끊김이 없고 균일할 것

2) 살포성능시험(퇴비살포기에 한함)

가)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살포폭 내에서는 살포상태가 균일할 것

나) 운전자에게 비산되지 않을 것

3) 흡입토출 성능시험(액상비료살포기에 한함)

가) 흡입에 대한 토출비율은 80% 이상일 것

4) 가압장치시험(액상비료살포기에 한함)

가) 물누설 및 기대에 이상이 없을 것

5) 주행시험

가) 이상소음, 이상발열, 이상진동이 없고 연소상태가 양호할 것

나) 물누설, 기름누설, 가스누설이 없을 것

다) 각 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라) 직진성이 양호할 것

마) 선회성이 양호할 것

6) 브레이크 성능시험

가) 정차브레이크의 조작이 용이하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관성브레이크 포함)

나) 주차브레이크는 공시기의 전후 어느 방향이나 정지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7) 연속운전시험

가) 이상소음, 이상진동 등이 없을 것

- 나) 물누설, 기름누설, 가스누설이 없을 것
 - 다) 각 부의 체결상태가 양호할 것
 - 라) 1회 충전으로 4시간 이상 연속운전이 가능할 것(전동기식에 한함)
- 다. 조작성 난이도시험
- 1) 각 부의 조정 및 취급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주유가 용이할 것
- 라. 안전성시험
-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에 따른다.

15. 농업용 베일러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능률시험

- 가) 작업상태가 양호할 것
- 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2) 작업정도시험

- 가) 공시작물의 손실률은 5% 이하일 것
- 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3) 유압장치 작동시험

- 가) 유압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
- 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결속성능시험

- 가) 10개의 베일 성형과정 중 결속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1회이하일 것
- 나) 배출된 베일의 결속끈 감김이 일정한 간격으로 감겨 있을 것
- 다) 배출·낙하된 베일에 파손이 없을 것

다. 조작의 난이도

-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 2) 안정성이 있을 것
- 3) 정비 및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따른다.

16. 기타 기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이 정한 것에 따른다.

[별표 6]

농업기계 구조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농업용 트랙터

- 가. 농업용 트랙터에는 검정에 적합관정을 받은 보호구조물(안전캡 또는 안전프레임)이 장착되어 있을 것
- 나. 동력취출축은 회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물(ROPS)

보호구조물에 부착된 돌기물이나 내장품 등은 농업용 트랙터 전도시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농업용 콤바인

- 가. 최고작업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범위에서는 예취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자탈형에 한함)
- 나. 주행부가 작동되지 않아도 탈곡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다. 예취부는 별도로 고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가 있을 것
- 라. 자탈형 콤바인은 주행 변속단수에서는 예취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마. 자탈형 콤바인은 커터부에 벧짚 등이 막혔을 때 절단부의 동력이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탈곡부에는 위험시 작업자가 엔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작업자의 손이 용이하게 닿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자탈형 및 보통형은 곡물탱크 만재 및 2번구(오거타입 제외)의 이상 경보장치, 후진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4. 동력이앙기

- 가. 주간거리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나. 식부분수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다. 식부깊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라. 비료통의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측조시비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 마. 비료송출호스는 비료송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측조시비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 바. 작조날은 작업 시 이물질이 쉽게 걸리지 않는 구조일 것(측조시비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 사. 이양중지 시 비료송출도 중지되는 구조일 것(측조시비장치가 있는 것에 한함)
- 아. 비료통에는 사용비료의 종류와 용량이 표시되어 있을 것
- 자. 비료송출량 조절표시가 되어 있을 것
- 차. 식부장치부 또는 모공급대에는 각 조별 또는 각 2조별 이양정지장치나 모이송정지장치가 되어 있을 것(보행형은 제외)
- 카. 비료통 및 비료송출량 조절장치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일 것
- 타. 경운축은 동력이 끊김·연결이 가능한 구조일 것
- 파. 경운장치는 경심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하. 식부장치부에는 식부안전장치가 있을 것

5. 동력이식기

- 가. 차륜거리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나. 주간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다. 식부깊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라. 경사지 작업이 가능한 구조일 것
- 마. 조속레버, 정지버튼, 기타 등으로 엔진이 정지되는 구조일 것
- 바. 식부장치부에는 식부안전장치가 있을 것

6. 농업용 난방기

- 가. 농업용 고체연료난방기

- 1)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구명탄 난방기는 제외)
 - 2) 연소실은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3) 공시기에는 온도설정장치와 온도표시장치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설정온도에 따라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4)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등이 있을 것
 - 5) 전기부품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의 관통 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구조일 것
 - 6)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7) 송풍기용 모터에는 적당한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송풍기 부착기종에 한함)
 - 8) 전원스위치 등 각 조작장치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9) 통상 보수를 위하여 떼어내는 외판 및 내판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일 것 (보일러식 구조는 제외)
 - 10) 연통 부착구는 연통이 확실히 부착되어 연소가스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11) 연속공급식 공시기의 연료공급장치는 로터리밸브, 드롭슈트, 비상배출, 차단댐퍼 등 형식의 화염역류방지 구조이어야 하며, 85 ±5℃에서 연료 공급이 자동 차단되어야 하고 화염역류 감지 시 자동 작동되는 소화장치 및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12) 집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나. 농업용 유류온풍난방기
- 1) 사용버너는 건타입 버너일 것
 - 2)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 3) CO 및 SO₂ 등 유해 연소가스 및 연소생성물이 온풍에 혼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동 조사는 공시기에 물을 주입하여 누수 여부를 조사한다)

4) 연소실 및 열교환기의 재료의 두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열간압연강판 및 강대·내열강판·회주철품은 1.5mm 이상, 열간 및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의 연소실은 1.5mm 이상, 열교환기는 1.2mm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성을 갖는 구조일 것. 다만, 중유용 버너의 공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호 칭 규 격	연 소 실 두 께
kcal/h(MJ/h)	mm
200,000 미만(837 미만)	2.0 이상
200,000(837)	2.5 이상
250,000(1,047)	"
300,000 이상(1,256 이상)	3.0 이상

- 5) 연소실은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6) 버너입구에 연료휠터가 부착되어 있을 것
- 7) 공시기에는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접지 표시가 있을 것
- 8) 공시기에는 온도설정장치와 온실내의 온도감지 및 표시장치가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설정온도에 따라 온도를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9)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등이 있을 것
- 10) 전기부품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의 관통 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구조일 것
- 11)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 지지 않는 구조일 것
- 12) 시동 시에 연소실 및 열교환기의 잔류가스 배출 후 점화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 13) 송풍기용 모터에는 적당한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 14) 버너에는 KS B 6221(건타입오일버너)에 따른 버너의 호칭, 연료분사량, 제조번호, 제조년월, 제조자명 또는 약호가 기재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15) 연료탱크는 연료잔량 확인장치, 통기관 및 퇴유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격 난방능력으로 100시간 이상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고,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구조일 것
- 16) 점화 및 소화장치 등 각 조작장치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17) 통상 보수를 위하여 떼어내는 외판 및 내판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일 것
- 18) 연통 부착구는 연통이 확실히 부착되어 연소가스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19) 유류용 난방기에는 검정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농업기계에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받을 것

다. 농업용 전기온풍난방기

- 1) 발열체는 밀폐형 구조의 전열파이프 또는 전기히터로서 개별 조립이 가능하고, 고장 시 개별수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 2) 온도조절장치는 조작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설정온도에 따라 온도를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3) 온실 내의 온도, 토출공기온도 및 발열부(또는 열매체부)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고, 온도센서는 확실히 고정설치 되어 있을 것
- 4)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등이 있을 것
- 5)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6) 열매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7) 송풍기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 8) 전원 연결 및 차단 등 조작 장치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9) 통상 보수를 위하여 떼어내는 외판 및 내판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일 것
- 10) 간접열식의 경우 열매체 탱크에는 탱크 최대내압 초과 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을 것

라. 농업용 혼합열원난방기

1) 공통

- 가) 온도조절장치는 조작성 용이한 장소에 부착되어 있고 설정온도에 따라 온도를 자동제어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다) 송풍기용 전동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온풍식에 한함)
- 라) 통상 보수를 위하여 떼어내는 외판 및 내판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일 것(온수식 구조는 제외)
- 마)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등이 있을 것
- 바) 전원 연결 및 차단 등 조작 장치는 조작성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사) 공시기에는 접지단자가 설치되어 있고 접지 표시가 있을 것
- 아) 전기부품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의 관통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구조일 것
- 자) 점화 및 소화장치등 각 조작장치는 조작성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차) 연통 부착구는 연통이 확실히 부착되어 연소가스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전기용 제외)

2) 전기용

- 가) 발열체는 밀폐형 구조의 전열파이프 또는 전기히터로서 개별 조립이 가능하고, 고장 시 개별수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나) 온실내의 온도, 토출공기(또는 물) 온도 및 발열부(또는 열매체부)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고, 온도센서는 확실히 고정설치 되어 있을 것
- 다) 열매체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라) 간접열식의 경우 열매체 탱크에는 탱크 최대내압 초과 시 압력을 배출할 수 있는 안전밸브가 장착되어 있을 것

3) 액체연료용

- 가) 사용버너는 건타입 버너일 것
- 나)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 다) 온풍식의 경우 유해 연소가스 및 연소생성물이 온풍에 혼입되지 않는 구조일 것(동 조사는 공시기에 물을 주입하여 누수 여부를 조사한다)
- 라) 연소실 및 열교환기의 재료의 두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열간압연강판 및 강대·내열강판과 회주철품의 경우 1.5mm 이상, 열간 및 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의 연소실의 경우 1.5mm 이상, 열교환기의 경우 1.2mm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성을 갖는 구조일 것. 다만, 중유용 버너의 공시기는 다음에 따른다.

난방능력(kcal/h(MJ/h))	연 소 실 두 께(mm)
200,000(837) 미만	2.0 이상
200,000(837) ~ 300,000(1,256)	2.5 이상
300,000(1,256) 이상	3.0 이상

- 마) 연소실은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바) 버너입구에 연료휠터가 부착되어 있을 것
- 사) 버너에는 KS B 6221(건타입오일버너)에 따른 버너의 호칭, 연료분사량, 제조번호, 제조년월, 제조자명 또는 약호가 기재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아) 연료탱크는 연료잔량 확인장치, 통기관 및 퇴유장치가 있어야 하며, 정격 난방능력으로 100시간 이상 연속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고,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구조일 것
- 자) 유류용 난방기에는 검정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은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농업기계에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받을 것

4) 고체연료용

- 가) 연소실의 연소상태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구멍탄 난방기는 제외)

- 나) 연소실은 내부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다) 연속공급식 공시기의 연료공급장치는 연소실의 화염이 연료탱크로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화염 역류 방지장치가 있어야 하며, 연료 공급구에는 $85 \pm 5^{\circ}\text{C}$ 에서 연료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온도감지장치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7. 농산물건조기

- 가. 버너의 연소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건조실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와 그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고, 온도센서는 확실히 고정설치 되어 있을 것
- 다. 건조실의 벽 및 천정은 단열재를 사용하고 공기누설이 안 되는 구조일 것
- 라. 열교환기는 연소가스 및 그을음이 건조실내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 마. 연료탱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이거나 내부피막처리가 양호하고, 연료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경보장치가 되어 있을 것
- 바. 유류용 건조기에는 가동시간 계측기 검정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가동시간을 계측할 수 있을 것. 단 검정에 적합 받은 가동시간계측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업기계에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받을 것
- 사. 농산물저온저장고(50m^3 이하) 검정기준의 구조조사 기준을 만족할 것(냉장 겸용식에 한함)
 - 아. 저온 저장할 수 있는 농산물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할 것(냉장 겸용식에 한함)
 - 자. 가로 × 세로($200\text{mm} \times 100\text{mm}$)의 “저온저장고로 사용 시 수분 손실로 인하여 농산물이 마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표시를 기대 전면부에 부착할 것(냉장 겸용식에 한함)
 - 차. 사용설명서 및 카탈로그에 “저온저장고로 사용 시 수분 손실로 인하여 농산물이 마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명기할 것(냉장 겸용식에 한함)

8. 농산물저온저장고

가. 50m³ 이하

- 1)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통전 또는 정전표시 등이 있을 것
- 2) 전기부품 및 배선은 열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선의 관통부분은 전선이 상하지 않는 구조일 것
- 3) 기내에 결로된 물방울이 전기부품 및 배선 등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 떨어지지 않는 구조일 것
- 4) 압축기용 모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가 있을 것
- 5) 전원스위치 등 각 조작장치는 조작이 쉬운 위치에 있을 것
- 6) 통상 보수를 위하여 떼어내는 외판 및 내판은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구조일 것
- 7) 바닥면적이 10.56m² 이하 일 것
- 8) 이동이 가능한 구조일 것
- 9) 냉각장치의 이상 발생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경고부저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50m³ 초과

저장실 냉각부하는 설치된 압축기, 증발기, 응축기의 냉각능력이 계산된 저장실 냉각부하의 100% 이상 일 것

9. 가정용 도정기

가. 벼를 투입하면 제현 및 정미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백미로 가공되는 구조일 것(제현 및 정미 동시작업기에 한함)

나. 제현장치는 왕겨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다. 정미장치는 쌀겨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라. 탈부율 및 도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원료과다 투입 등으로 과부하 발생 시 제현부 및 정미부 구동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10. 농업용 동력운반차

가. 덤프시 적재함 문은 개폐가 용이한 구조일 것

나. 적재함 들어올림장치의 조작은 운전좌석 및 적재함에서 별도로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윤활유 점검장치가 있을 것

라. 승용형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원동기의 최대출력은 차량중량(적재중량 포함) 100kg당 0.5kW 이상일 것

2) 좌석수는 1인석이고 좌석수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일 것

3) 구동차륜의 타이어는 지면과 접촉하는 부분의 패턴이 러그형 혹은 블록형의 것일 것(궤도형은 제외)

4) 적재설비의 바닥면적은 1.0m² 이상이고, 적재실 바닥면적/차실 바닥면적비는 1 이상일 것

5) 적재정량은 5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6) 적재정량 적재 시 조향차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은 운전석에 운전자 중량(75kg 하중)을 탑재한 공차상태에서 전체중량의 30% 이상일 것(궤도형은 제외)

7) 적재함 전·후 방향 하중 중심은 전차축 중심과 후차축 중심 사이에 있을 것

8) 차동장치가 있는 경우 차동잠금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가 있을 것(2륜구동에 한함). 다만, 구동축에는 일체형 차축을 사용할 수 없다.

9) 농경지 이외의 도로에서 주행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경고표지판(가로 165mm × 세로110mm 크기)이 부착되어 있을 것

마. 전기구동식의 경우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등의 전기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피복(전기배선에 보호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말한다)은 주황색으로 할 것

2) 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이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등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3) 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은 노출된 활선도체부가 없고 중간에 이음부가 없을 것

- 4) 전기장치와 전기배선은 접속 시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접속단자의 극성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극성이 바뀔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는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가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있을 것
 - 6) 전기장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쉽게 개방·분해·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바. 구동용축전지는 축전지별 KS규격에서 규정한 방전종지전압(방전마침전압)에 도달된 경우에도 12시간 이내에 완충될 수 있을 것. 다만, 과방전방지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과방전방지장치가 작동되는 전압을 방전종지전압으로 간주한다.

11. 농업용 로더

- 가. 버킷 경사각은 전경각 45° 이상, 후경각 35° 이상일 것
- 나. 오일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 확인장치와 배유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전용형에 한함)
- 다. 로더(전용형에 한함) 관절부의 승하강 장치 및 버킷, 주행장치는 작업자가 운전장소에서 좌석벨트(안전바 포함)를 착용한 상태에서만 구동되는 구조일 것

12. 농업용 굴삭기

- 가. 배토판 또는 받침대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나. 오일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유량 확인장치와 배유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전용형에 한함)

13. 관리기

- 가. 축전지는 자체 충전되는 구조일 것(전기시동식에 한함)

나. 핸들의 상하조절이 가능하고 바퀴형일 경우 방향 조절이 가능할 것(보행형에 한함)

다. 차륜거리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보행형에 한함)

14. 비료살포기

가. 비료살포기

- 1) 비료탱크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거나 피막처리가 양호하고 운전자가 탱크내의 잔량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살포장치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거나 피막처리가 양호할 것
- 3) 살포량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선회 또는 정지 시 비료가 배출되지 않는 구조이며, 농업용 트랙터용은 농업용 트랙터 운전석에서 살포량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나. 액상비료살포기

- 1) 액비탱크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이거나 내부피막처리가 양호하고 액비탱크의 량을 확인할 수 있고 액비잔량을 배출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2) 액비펌프는 액비가 역류되지 않는 구조이거나 역류방지장치가 있을 것
- 3) 액비펌프는 상용회전수가 PTO 표준회전속도에 적합한 구조일 것
- 4) 제동장치는 자주형은 정차브레이크와 주차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고 견인형은 주차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을 것
- 5) 전조등이 부착되어 있고 최고주행속도가 15km/h 이상일 경우에는 방향지시등, 미등(차폭등), 제동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자주형에 한함)
- 6) 최고주행속도가 15km/h 이상일 경우에는 엔진회전계 또는 속도계, 연료계, 주행거리계 또는 엔진사용시간계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자주형에 한함)

다. 퇴비살포기

- 1) 적재함은 퇴비를 적재하는 데 용이한 구조일 것
- 2) 퇴비살포량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 3) 퇴비살포기 적재정량은 퇴비의 비중(1.1)을 적용하여 산정한 적재함 크기의 값 이내일 것

15.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

- 가. 성형밀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끈 인장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끈 인장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다. 베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각형 베일러만 해당한다)

16. 기타 기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이 정한 것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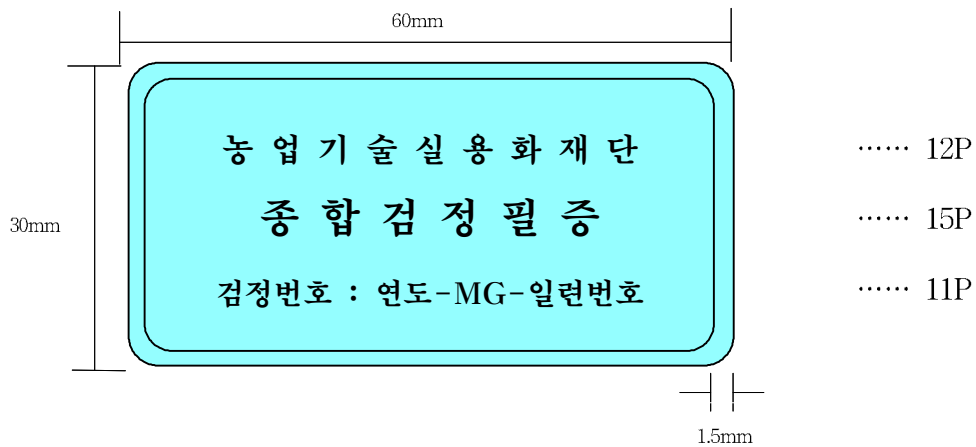
[별표 7]

농업기계 사후검정기준(제4조제4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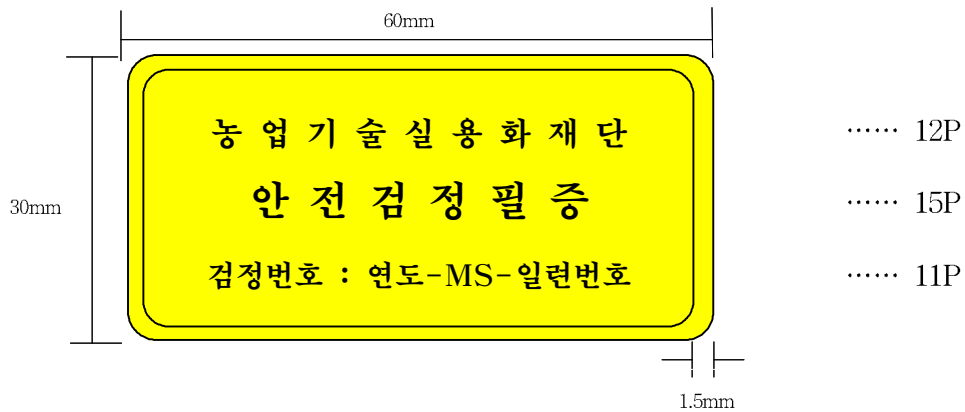
1. 규격: $\pm 5\%$
2. 엔진 정격출력: $\pm 10\%$
3. 변속(감속)비: $\pm 3\%$
4. 최고주행속도: $\pm 5\%$
5. 크기(길이, 폭, 높이): $\pm 10\%$
6. 질량(중량): $\pm 10\%$
7. 타이어 최대 허용하중: $\pm 5\%$
8. 타이어 크기
 - 가. 폭: $\pm 30\%$
 - 나. 지름: $\pm 15\%$
9. 차륜거리: $\pm 10\%$
10. 축간거리: $\pm 5\%$
11. 연료소비량(소비전력량): $\pm 5\%$
12. 최대견인출력: $\pm 10\%$
13. 최소선회반경: $\pm 10\%$
14. 상용회전속도: $\pm 5\%$
15. 최고 작동유압: $\pm 5\%$
16. 효율: $\pm 10\%$
1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별표 8]

농업기계 검정필증(제6조제4항 관련)



1. 재료: 테프론스티커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연청색)
3. 기재사항: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4. 글씨체: 견출명조체(KM)
5. 글씨크기: 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6. 기타: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1. 재료: 테프론스티커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노랑색)
3. 기재사항: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번호를 기재한다.
4. 글씨체: 견출명조체(KM)
5. 글씨크기: 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6. 기타: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별표 9]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제15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1. 사후검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후검정을 위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검정적합취소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정적합취소
3. 안전성에 관한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model) 보완지시
4. 주요 부품의 파손으로 인하여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5. 주요 부품의 임의 개조·변경으로 인하여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6. 성능검정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검정적합취소,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7. 성능검정 항목 중 1개 항목이나 조작의 난이도 등이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하금지 및 해당 모델 보완지시
8. 도장 또는 가공 상태 등 외형적 요인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모델 보완지시

[별표 10]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제17조 관련)

구 분	대형 사후관리업소	중형 사후관리업소	소형 사후관리업소
1. 시설기준 ○ 옥내작업장 ○ 수리장비 ○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300㎡ 이상 크레인이나 호이스트(2톤 이상) 중 하나 갖출 것	150㎡ 이상 호이스트·체인블럭 또는 리프트(2톤 이상) 중 하나 갖출 것	50㎡ 이상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기계분야 기능사는 3년 이상, 농업기계분야 기능사는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는 5년 이상, 농업기계분야는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두 명 이상	대형 사후관리업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 명 이상과 수리보조 한 명 이상

- 비고) 1. 인력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관리업자 자신의 자격도 포함하여 판단함.
2. 실내 작업장은 수리·정비시설, 수리용 부품 보관시설을 포함함.
3.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은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 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별표 11]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제18조의2 관련)

1. 농업용 트랙터
2. 농업용 동력운반차
3. 농업용 콤바인
4. 스피드스프레이어
5. 트레일러
6. 비료살포기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업기계

[별표 12]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제18조의5제2항 관련)

1. 가동부의 방호
2. 동력취출장치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3. 안전장치
4. 제동장치
5. 운전석 및 그 밖의 작업장소
6. 운전·조작장치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8. 계기장치
9. 등화장치
10. 고온부의 방호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12. 비산물의 방호
13. 축전지의 방호
14. 안정성 관련 장치
15. 작업등
16. 전도 시 운전자 보호장치
17. 안전표시
18. 취급성 관련 장치
1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별표 13]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18조의5제3항 관련)

1. 가동부의 방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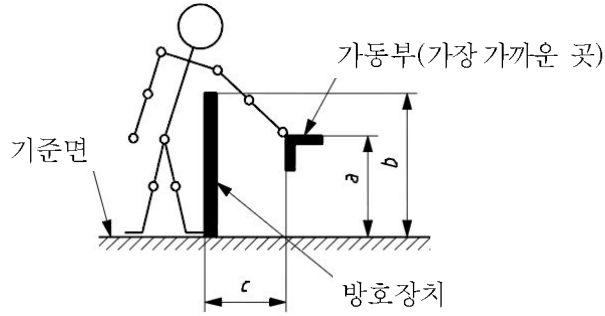
가. 다음의 가동부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도록 커버, 케이스 등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 1) 회전축(접속부, 축단 포함), 자재이음매 및 노출된 볼트, 키, 핀, 나사 등의 돌출부가 있는 회전부분. 다만, 분당 10회전 미만의 회전축, 노출된 회전축의 길이가 축외경의 1/2 미만의 길이에 해당되는 회전축은 제외한다.
- 2) 폴리, 플라이휠, 치차(마찰전동장치 포함), 케이블, 스프로킷, 벨트, 체인, 클러치 및 커플링
- 3) 로터리, 굴삭부, 송풍기, 절단부, 예취날, 결속부, 인기부, 반송용벨트 및 체인, 컨베이어 등
- 4) 작업위치에 근접하고 있는 차륜 및 무한궤도
- 5) 기타 틈새 및 절단작업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다만,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동부와 작업자의 사이에 방호장치(가드)를 부착할 경우 안전거리(위험부에 접촉하지 않는 거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작업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

- 1) 가동부가 작업자의 상방향(작업자가 서서 손을 뻗었을 때)에 있는 경우 안전 거리는 지면 또는 방책면으로부터 2500mm 이상일 것
- 2) 방호장치 아래쪽의 안전거리는 방호장치의 아래측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며, 방호장치의 개구부 크기가 작업자의 손가락, 손, 팔 등이 들어갈 정도인 경우는 5)의 안전거리를 적용하고 그 이상 크기는 작업자에게 위험을 미치지 않게 방호되어 있을 것

3) 방호장치로부터의 측방 안전거리는 표 1(그림 1 참조)과 같다. 다만 방호 장치의 높이는 1000mm 이상일 것



- a 지면 또는 기준면에서 가동부까지의 거리
- b 방호장치의 높이
- c 방호장치에서 가동부까지의 안전거리

그림 1. 방호장치에서 가동부까지의 안전거리

표 1. 측방 안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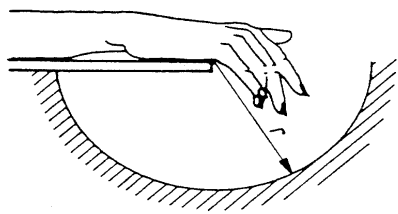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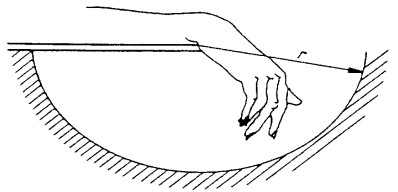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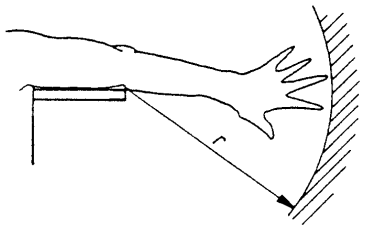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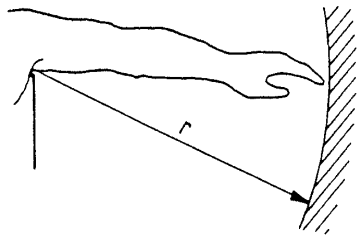
(단위 : mm)

b \ a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c (최소값)							
24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200	-	250	350	400	500	500	600	600
2000	-		350	500	600	700	900	1100
1800	-	-	-	600	900	900	1000	1100
1600	-	-	-	500	900	900	1000	1300
1400	-	-	-	100	800	900	1000	1300
1200	-	-	-		500	900	1000	1400
1000	-	-	-	-	300	900	1000	1400
800	-	-	-	-	-	600	900	1300
600	-	-	-	-	-	-	500	1200
400	-	-	-	-	-	-	300	1200
200	-	-	-	-	-	-	200	1100

4) 방호장치의 개구부 및 장애물로부터 안전거리는 표 2와 같다.

표 2. 방호장치의 개구부 및 장애물로부터 안전거리

(단위 : mm)

신체부분	그림	안전거리(r)
손가락 뿌리에서 손가락 끝 (이하 “손가락”이라 한다)		$r \geq 120$
손목에서 손가락 끝 (이하 “손”이라 한다)		$r \geq 230$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r \geq 550$
어깨에서 손가락 끝 (이하 “팔”이라 한다)		$r \geq 850$

5) 방호장치 내측의 안전거리는 개구부의 형상 및 크기에 따라 표 3 및 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다각형은 사각형 또는 긴 홈으로 본다.

표 3. 사각형 또는 긴 홈의 개구부로부터 안전거리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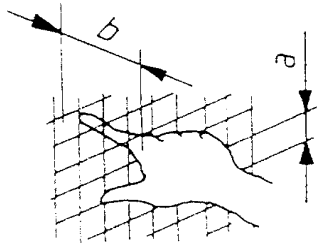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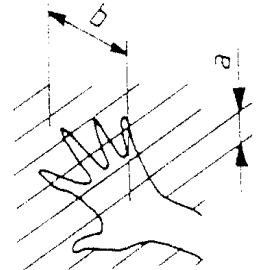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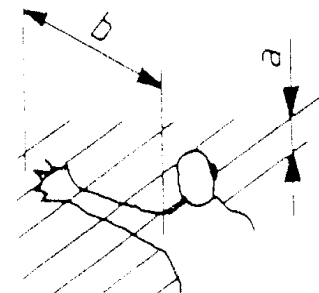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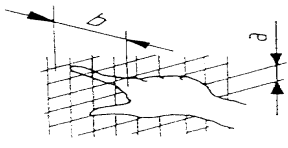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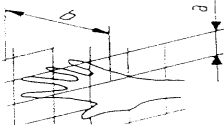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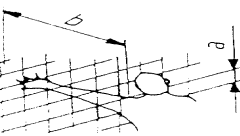
신체부분	그림	틈새폭(a)	안전거리(b)
손가락 끝	-	$4 < a \leq 8$	$b \geq 15$
손가락		$8 < a \leq 20$	$b \geq 120$
손		$20 < a \leq 30$	$b \geq 200$
팔		$30 < a \leq 135$	$b \geq 850$

표 4. 그물망 또는 격자로부터 안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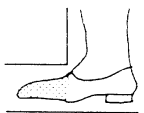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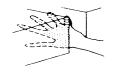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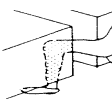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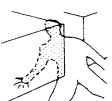
(단위 : mm)

신체부분	그림	틈새폭(a) (원형외경부 직경)	안전거리 (b)
손가락 끝	-	$4 < a \leq 8$	$b \geq 15$
손가락		$8 < a \leq 25$	$b \geq 120$
손		$25 < a \leq 40$	$b \geq 200$
팔		$40 < a \leq 250$	$b \geq 850$

6) 끼는 곳으로부터 안전거리는 표 5와 같이 한다.

표 5. 끼는 곳으로부터 안전거리

(단위 : mm)

신체부분	그림	안전거리	신체부분	그림	안전거리
손가락		25	발		120
손 손목 주먹		100	다리		180
팔		120	몸통		500

다. 방호장치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1) 방호장치는 정상적인 운전과 정비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 2) 방호장치는 통상 사용조건 하에서 균열이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영구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을 것
- 3) 통상 떼어낼 필요가 없는 보호장치는 볼트, 분할핀 또는 공구를 사용하여 탈착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4) 개폐 가능한 방호장치는 힌지, 링크 등으로 부착상태를 확실하게 유지할 것

2. 동력취출축 및 동력입력축의 방호

가. 동력취출축(원동기에 한함)은 커버 등으로 방호되는 구조이고, 동력취출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축단부가 캡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또한 캡은 축과 함께 회전되지 않는 구조이고 차체에 부착되어 자연적으로 이탈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동력입력축(부속작업기에 한함)의 상면 및 측면은 커버로 방호되어 있을 것
다. 동력취출축 방호장치는 KS B ISO 500 농업용 트랙터-후면 장착된 동력취출 장치-형식1, 2와 3에 따르며, 동력입력축은 축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축 윗면과 측면이 방호되어 있어야 하고 구조는 제1호다목의 기준을 만족할 것
라. 유니버설조인트로 연결되는 동력취출전동축은 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 모든 면이 커버로 방호되고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3. 안전장치

가. 전기시동장치는 시동 시 주행부 및 작업부가 작동되지 않은 구조일 것. 다만,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는 제외한다.
나. 원심식 클러치를 사용하고 칼날이 장비된 기계는 기관 공회전속도의 125% 이내의 회전속도에서 칼날부가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정치식기계는 원동기(별도의 부착동력기 포함), 입력축 또는 공급부 등에 동력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동력차단장치는 통상의 작업위치에서 작업자가 용이하게 동력을 차단할 수 있을 것. 또한 일단 동력이 차단된 후에는 다시 조작하지 않는 한 작동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라. 승강 가능한 작업기 또는 작동부는 필요한 승강위치에서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을 것
- 마. 원동기의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한번 동작으로 원동기를 정지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일단 정지시킨 후 재조작하지 않는 한 재시동 되지 않는 구조일 것
- 바. 동력경운기는 기체와 작업자 사이에 로터리가 있는 경우 주행변속레버를 후진위치에 넣으면 로터리가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구조 또는 로터리를 정지하지 않으면 주행변속 레버가 후진위치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일 것
- 사. 보행형 기계 중 후진 변속을 하는 것은 작업자의 손이 용이하게 닿는 위치에 원동기의 긴급정지장치가 있을 것. 다만, 손을 떼면 자동적으로 주클러치가 끊기는 구조이거나 신체가 기체에 끼었을 때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가진 것은 제외한다.
- 아. 콤파인, 동력예취기 및 동력제초기는 예취날(제초날)의 작동을 별도로 정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 비료살포기, 사료작물수확기, 결속기, 동력절단기, 사료배합기, 동력파쇄기 및 농용톱밥제조기는 작업 중 과부하가 걸릴 경우 작업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는 안전장치(3.7kW 미만의 엔진구동식은 제외)가 있어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용 결속기는 베일성형완료를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자동방출형은 제외한다)
- 차.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농용난방기, 가정용도정기 및 사료배합기 등 상용 전원을 사용하는 정치식 기계는 누전에 따른 감전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접지장치가 있을 것
- 카.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및 농용난방기(전기식은 제외)는 사용 중 정전된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하고 연소실 및 열교환기의 잔류가스배출 후 점화할 수 있는 구조로 재통전한 경우 폭발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버너 및 송풍기 등의 작동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있을 것

- 타. 농용난방기에는 온도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2중 이상의 안전장치가, 송풍기 구동 모터부에는 과전류 차단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 파. 운전위치에서 기체후방을 확인하기 곤란한 승용자주형 농업기계는 후진 시 경고음을 발생하든가 또는 기체후방의 물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가 있을 것
- 하.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스피드스프레이어(승용자주형),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자주형) 및 주행속도가 15 km/h 이상인 승용자주형 농업기계에는 반사면의 각도조절이 가능한 후사경이 부착(1개일 경우 왼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후사경의 지지부는 거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예리한 돌출부나 모서리가 없을 것. 다만, 농업용 트랙터 캡형 및 4주식 프레임형은 좌우에 각각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거. 승용자주형 기계에는 경음기가 부착되어 있을 것
- 너. 농용고소작업차(지면으로부터 작업대 바닥판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승강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한 차량), 스피드스프레이어용작업대(스피드스프레이어에 약액탱크 및 분무장치 등을 떼어내고, 과수적과, 가지치기 등을 위해 2m 미만으로 승강 가능하도록 설치된 작업대) 및 농용리프트(창고 등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에 탑승하지 않고 농산물의 운반 및 적재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는 다음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 1) 승강장치는 적재하중의 +10% 범위의 하중에서 상승장치가 자동 정지되는 구조이거나 경음장치가 있을 것
 - 2) 작업대를 평형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농용고소작업차에 한함)
 - 3) 아우트리거(궤도 또는 타이어 접지면 보다 더 낮은 지면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하지 않으면 승강장치, 작업장치 등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아우트리거를 사용하지 않을 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경고장치(램프 등)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농용고소작업차에 한함).
 - 4) 승강장치 및 신축장치는 유압장치 등의 이상으로 작업대의 급격한 강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 것

- 5) 기관이 정지해도 작업대 위의 작업자가 안전하게 지상에 내릴 수 있는 구조일 것
- 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다음의 기계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서 지정하는 안전인증기관의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것일 것

- 1) 전기식 농용난방기(전기혼합열원식 포함)
- 2) 전기식 농산물건조기(히트펌프식, 냉장겸용식 및 전기혼합식 포함)

4. 제동장치

가. 자주식기계는 정차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주클러치를 차단하여 용이하게 정지되는 보행형 기계(동력경운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제외)의 정차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와 작업지지대(아우트리거포함)에 의하여 주차시 밀림을 방지할 수 있는 농용굴삭기 및 농용고소작업차의 주차브레이크는 제외한다.

- 1) 자주식 기계는 전장비 상태에서(기종별 정차브레이크 시험방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최고속도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는 다음 식에 따른다.

$$S_{\max} \leq 0.15V + \frac{V^2}{116}$$

여기서, S_{\max} : 제동거리(m)

V : 시험속도(km/h)

- 2) 주차브레이크는 기종별 주차브레이크 시험방법에 따라 경사로에서 전·후방향 밀림이 없을 것. 다만,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20% 경사로에서 실시한다.
 - 3) 유압 또는 전동기 구동식으로 정차 및 주차브레이크 기능을 갖춘 것은 이것을 정차 또는 주차브레이크로 본다.
- 나. 피견인식 주행작업기에는 주차브레이크가 있을 것. 주차브레이크는 기종별 주차브레이크 시험방법에 따라 경사로에서 전·후방향 밀림이 없어야 하며, 규정된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는 20% 경사로에서 실시할 것. 다만, 바퀴고

임대로 주차브레이크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체에 부대품으로 신고 다닐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2개 이상의 고임대를 갖추어야 한다.

고임대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mm 미만인 경우	타이어의 반지름이 480mm 이상인 경우
바닥	길이	320mm 이상	400mm 이상,
	너비	160mm 이상	200mm 이상
높이		190mm	230mm
반지름		460mm	560mm

다. 농업용 트랙터용 트레일러, 액상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원거리용 방제기, 동력탈곡기(주행형)에는 정차제동장치가 있을 것. 관성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1) 농업용 트랙터 등 견인동력기가 후진할 경우 관성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장치를 가질 것
- 2) 농업용 트랙터 등 견인동력기가 전진할 경우 관성브레이크는 제동기능이 해제되는 구조일 것

라. 주차브레이크의 조작력은 발조작장치의 경우 600N 이하, 손조작장치의 경우 400N 이하일 것

마. 손으로 밀어 이동이 가능한 정치식 기계는 고정된 위치에서 작업할 수 있을 것

5. 운전석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자가 승차하는 기계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손잡이 또는 발판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기계 자체가 그에 상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승강발판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이고 최하단 발판의 높이는 지상에서 550mm 이하이며 발판과 발판의 간격은 300mm 이하일 것

- 2) 승강발판은 장변의 내폭은 200mm 이상이고, 단변의 폭(기체와의 공간포함)은 150mm 이상일 것. 또한 단독발판의 경우 발판과 승강장(풋플레이트)과의 간격은 350mm 이하일 것
- 나. 운전좌석은 등받이가 있으며, 스프링 등 완충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전·후 방향으로 50m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보조좌석은 제외)
- 다. 운전석에는 운전자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측면지지대(좌석주변 측면지지대 또는 좌석벨트 포함)가 있을 것. 다만, 동력이앙기 및 최고주행속도가 10km/h 이하인 농업기계는 제외한다.
- 라. 운전실의 바람막이 및 창유리는 KS L 2007(자동차용 안전유리) 또는 관련 국제규격 및 외국규격의 인증을 받은 안전유리(합성유리, 강화유리, 부분 강화유리 등) 또는 그와 동등한 것을 사용할 것
- 마. 농용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작업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작업대에는 바닥판으로부터 1m 이상 위치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드레일과 중간에 보조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대가 펼쳐지는 구조의 경우 펼쳐지는 부분은 안전띠 부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작업자 출입문이 있는 경우 닫힘 상태를 유지하는 고정장치가 있을 것
 - 3) 작업대 바닥판 가장자리에는 미끄럼방지용 턱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대가 펼쳐지는 구조의 경우 펼쳐지는 부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 안전 캡을 갖춘 기계의 운전석은 긴급시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탈출을 위하여 창유리를 깰 수 있는 기구가 운전석 내부에 설치되어 있을 것

6. 운전·조작장치

- 가. 조향장치, 변속레버, 제동장치, 동력차단장치, 가속장치, 주행용 등화조작장치, 원동기정지장치 등 운전·조작장치는 통상의 작업위치에서 안전·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조작장치는 운전좌석 종방향 중심면에서 좌·우 각각 500mm 이내에 배치되어 있을 것. 다만, 캡형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의 원동기정지장치는 제외한다.
 - 2) 운전·조작장치 표시 및 계기판에는 한글, 숫자, 그림 또는 KS B ISO 3767의 기호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을 것
- 나. 시동(점화)스위치는 운전위치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시계방향으로 돌릴 때 시동(점화)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릴 때 정지되는 구조일 것이다. 브레이크레버는 운전석에서 잡아당겼을 때, 그리고 페달은 전방 또는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 작동되는 구조일 것. 또한 브레이크 페달은 운전자의 오른발 조작에 편리한 위치에 배치될 것(다만, 유압무단변속기 장착기대는 제외)라. 전·후진 선택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 변속 위치가 있어야 하며, 전·후진 레버는 전진 시에는 전방으로, 후진 시에는 후방으로 조작하는 구조일 것이다. 승용형기계의 조향기구는 조향차륜의 반작용에 의해 조향핸들 또는 레버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힘을 감소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마. 승강부의 승강장치에는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거나 또는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취부되어 있을 것
- 사. 페달류는 크기 및 형상은 운전자가 발로 밟아서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게 되어 있어야 하며 가속페달은 우측 발이 용이하게 닿는 거리 내에서 우측 전·하방에 설치하고 또한, 주클러치 페달은 운전자의 왼발 조작이 편리하도록 좌측 전방으로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을 것
- 아. 승용형기계중 차동장치의 잠금장치를 가진 것은 부주의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구조일 것
- 자. 선회 시 전륜증속장치를 가진 것은 그 기능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고 작동상태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램프 등 표시장치가 있을 것
- 차. 좌우 독립브레이크를 가진 것은 좌우 브레이크 페달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램프 등의 표시장치(농업용 트랙터에 한함)가 있을 것

카. 농용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작업대 및 농용리프트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탑승하여 작업하는 작업대에는 승강장치 등 기계 작동장치의 조작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주행장치부 작동장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승강장치 등 기계 작동장치의 조작장치는 조작하고 있는 동안에만 작동하는 구조일 것. 다만, 작동을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작업대 위에서 주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기계는 조작장치 위치에 전·후진 방향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을 것

7. 작업기 취부장치 및 연결장치

가. 연결하지 않으면 기체가 불안정한 탑재식 또는 피견인식 작업기는 전도되지 않도록 지지할 수 있는 받침대 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나. 농업용 트랙터와 농업용 트랙터용 작업기의 3점 지지장치는 'KS B ISO 730-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후방 3점 지지 장치-1부:카테고리1,2,3,4', 'KS B ISO 730-2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 3점지지장치-2부:카테고리 1N(협폭히치)' 및 'KS B ISO 8759-1 농업용 차륜형 트랙터-전방부착장비-1부:동력취출장치와 3점링크'에 적합한 구조일 것. 다만, 특수한 작업기의 경우 하부히치점 간격 및 마스트 높이 치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 공차상태에서 견인봉을 수평으로 하여 측정한 히치점 하중이 250N을 초과하는 피견인식 작업기에는 손으로 들어올리지 않고 견인기계에 장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 것

8. 계기장치

가. 농업용 트랙터, 콤팩트, 최고 주행속도가 15km/h 이상 승용자주행 농기계는 기관회전 속도계 또는 주행속도계, 연료계, 주행거리계 또는 엔진사용시간계의 계기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계기내용을 야간에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발광도료 등을 사용해서 조명 장치를 대신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은 엔진유탄유, 충전, 냉각수의 경고 또는 감지장치가 있을 것

9. 등화장치

가. 농업용 트랙터, 승용자주형 농업기계 중 스피드스프레이어·농업용 동력운반차·주행형동력분무기·퇴비살포기·원거리용 방제기 및 최고 주행속도가 15km/h 이상인 승용자주형 농업기계는 전조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이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전조등

가)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나)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다) 변환빔의 비추는 방향은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전조등의 비추는 방향이 하향으로 고정된 것은 제외한다.

2) 후미등

가)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나)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3) 제동등

가)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나)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야 할 것

다)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경우는 그 광도보다 3배 이상 높을 것. 다만, 전구 소비전력이 3배 이상인 경우는 광도가 3배 이상인 것으로 인정한다.

라)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가 유지될 것(점멸등은 제외)

4) 방향지시등

가)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나) 기체의 좌우에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기체너비의 50%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할 것

다)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점멸등은 제외)

나. 콤팩트, 동력경운기, 승용관리기, 농용굴삭기, 농용로더 및 승용자주형 동력 제초기는 등광색이 백색인 전조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 농업용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중 트레일러·결속기·스피드스프레이어·액상 비료살포기·주행형동력분무기·퇴비살포기·원거리용방제기 및 동력경운 기용 트레일러에는 가목의 2)부터 4)까지의 후미등(또는 점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다음 1)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야간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후미등이 야간반사판을 겸용할 경우 2)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야간반사판이 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반사광색은 적색일 것

2) 반사부의 유효면적은 35cm² 이상일 것(유효면적은 야간반사판의 반사돌기부 면적으로 함)

3) 지상으로부터 35cm 이상 150cm 이하의 높이로 기체 좌우에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고 기체너비의 50% 이상 간격을 두고 견고하게 부착(뒷문 제거 시에도 식별이 가능토록)할 것

4) 야간에 150m 후방에서 자동차 전조등으로 야간반사판을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라. 다목의 농업기계 중 적재정량 0.5톤 이하의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제동등은 제외되고 후미등과 방향지시등은 겸용할 수 있으며, 탑재형 농업기계는 부착동력기의 등화장치로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을 대신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야간반사판을 별도로 부착할 것

- 마. 농용굴삭기, 농용로더, 보행형 동력경운기용 스피드스프레이어 및 퇴비살포기, 승용관리기용 퇴비살포기, 보행형관리기용 트레일러, 자주형결속기(베일러), 주행형 동력탈곡기는 다목의 기준에 적합한 야간반사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바. 기체 폭이 부착동력기의 폭을 초과하는 농작업기 경우는 전방에서 보일 수 있는 황색 반사물질과 후방에서 보일 수 있는 적색 반사물질을 초과되는 돌출부 측단에 최대한 가까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사. 동력경운기는 피견인형작업기의 방향지시등, 후미등이 주행 시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아. 농업용 트랙터, 콤파인, 농업용 동력운반차(승용형에 한함) 및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에는 저속차량표시등이 고정 설치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1) 저속차량표시등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 2) 저속차량표시등의 등광색은 황색으로 할 것
 - 3) 저속차량표시등은 전·후·좌·우의 HV 측정점에서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의 것(“H”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 “V”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으로 국내·외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일 것
 - 4) 저속차량표시등은 원형(설치 밀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 5) 저속차량표시등화의 중심점은 기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빛 또는 반사물에 의한 반사광이 해당운전자의 운전 조작을 방해하지 않을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는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6) 저속차량표시등은 점등 시 공차상태에서 전·후·좌·우에서 관측 가능하고,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동력경운기용 트레일러의 경우 그

위치는 트레일러 가장 높은 위치(햇빛가리개 제외)에 20cm 이상의 길이 조절이 가능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7) 저속차량표시등은 일몰 후 자동점등 되거나 등화장치(전조등 또는 차폭등 또는 후미등)와 동시에 점등하고 소등하는 구조일 것. 다만 자동점등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점등·소등장치가 있어야 하고 등화장치와 동시에 점등하는 구조는 축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소등구조를 설치할 수 있다.
- 자. 농업용 트랙터는 차폭등과 비상점멸표시등이 부착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차폭등

- 가) 등광색은 백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것
나) 설치개수는 2개 또는 4개 일 것
다) 설치위치는 기체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며 기체바깥쪽으로부터 400mm 이내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

- 가)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시동스위치의 조작에 관계없이 점등조작이 가능한 구조일 것
다)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은 방향지시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차. 농업용 트랙터 및 피견인식 기계의 등화장치용 전기 커넥터로는 KS R ISO 1724를 만족하는 7폴형을 설치하여야 하며 농업용 트랙터에는 소켓형을 피견인식 기계에는 플러그형을 설치할 것

10. 고온부의 방호

- 가. 작업자가 주유 및 통상 작업 중 부주의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고온부(130℃ 이상)는 커버 등으로 방호되어 있을 것
나. 쓰레기, 작물 부스러기 등이 배기매니폴드, 소음기, 배기관 및 연소실에 퇴적되지 않거나 청소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다. 연료보급 시에 넘친 연료가 기관의 고온부에 닿지 않는 구조일 것
- 라. 건조기의 연소실은 이상연소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일 것

11. 돌기부 및 예리한 단면 등의 방호

- 가. 예리한 돌기, 원형단면 등은 운전 중 또는 점검조정 시 부주의로 접촉되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방호되어 있을 것
- 나. 디바이더 선단에는 탈착 가능한 커버가 있을 것. 다만, 선단이 위험이 없는 둥근형을 가진 구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12. 비산물의 방호

통상 작업위치에서 작업자가 작은 돌, 작물의 절단물, 절삭·파쇄물, 예취날의 파편 등의 비산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게 방호되어 있을 것

13. 축전지의 방호

축전지는 운전실에 설치되는 등 전해액이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진동·충격 등에 의해 이동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을 것

14. 안정성

- 가. 승용자주형 농업기계(별도의 안정도 시험 기준이 있는 기종은 제외)는 전 장비 상태에서 운전석에 75kg 하중을 탑재한 공차상태로 정적전도각 시험 장치의 30° 경사에서 좌우로 전도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만, 전도예방 경보장치 등 전도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 특수한 구조의 기계는 제외한다.
- 나. 승용자주형 스피드스프레이어는 운전석에 75kg 하중을 탑재하고 약액탱크에 물을 만제한 상태에서 정적전도각 시험장치의 32°(500L 미만의 웨도형은 30°)경사에서 좌우로 전도되지 않아야 하며, 기체에는 경사경보장치(적색경고등)가 설치되어야 하고 전도위험 경고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다. 승용자주형 농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에 작업기를 탑재하는 경우는 운전석에 75kg 하중을 탑재한 상태에서 적재정량 적재 시 조향차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이 전체 중량의 20% 이상(다만, 승용형 차륜식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30% 이상)일 것
- 라. 자주형 및 주행형 작업기의 경우 운전석에 75kg 하중을 탑재한 상태에서 적재정량 적재시의 운하중은 공기타이어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이내일 것
- 마. 농용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작업대 및 농용리프트의 전·후·좌·우 안정도는 각각 다음과 같은 구배에서 전도되지 않을 것
- 1) 적재하중(운전자 중량 75kg 포함)을 적재하고 아우트리거가 있는 경우 그것을 사용한 상태로 작업상태 중 가장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서 전·후·좌·우 정적 전도각은 5° 이상일 것
 - 2) 주행 가능한 상태에서 적재하중(운전자 중량 75kg 포함)을 적재하고, 아우트리거가 있는 경우 그것을 접은 상태로 작업상태 중 가장 넘어지기 쉬운 상태에서 전·후·좌·우 정적 전도각은 15° 이상일 것
 - 3) 적재하중을 부가하지 않고 작업대를 최저 하강위치(또는 프레임 격납상태)에서 좌·우방향의 정적 전도각은 30° 이상일 것

15. 작업등

야간작업이 가능한 기계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장소를 조명하기 위하여 작업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사용설명서에 야간작업금지표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6. 전도시 운전자 보호장치

- 가. 농업용 트랙터의 보호구조물에는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제조자가 표시된 형식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
- 나.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농용로더는 운전좌석에 좌석벨트(안전바 포함)가 부착되어 있을 것

17. 안전표시

가. 다음 부분의 가까운 곳에는 KS B ISO 11684(안전표시와 위험그림)에 따른 내구성이 있는 안전표시가 부착되어 있을 것

- 1) 구조상 커버 등으로 방호가 곤란한 작동부
- 2) 기타 안전상 중요한 부분

나. 안전표시는 작업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게 아래의 장소에 그림 또는 한글로 부착되어 있을 것

- 1) 위험에 가장 근접한 장소
- 2)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
- 3) 눈에 띄기 쉽고 보기 쉬운 장소
- 4) 유지관리에 오손, 마모 및 박리되기 어려운 장소

다. 부착된 안전표시는 물에 젖은 면재질의 형겅으로 15초 동안 문지른 후 다시 석유에 젖은 형겅으로 15초 동안 문지른 뒤 30초 후에 표지에 있는 그림, 기호, 문자 등 내용을 쉽게 관독할 수 있어야하며 표지판 가장자리가 말리지 않을 것

라. 부착된 안전장치 및 안전방호장치를 사용자가 제거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 내용이 그 장치에 표시되어 있을 것. 다만, 표시가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되어 있을 것

마.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그 해당부위에 안전표시가 있을 것. 다만, 표시가 어려울 때는 사용설명서에 게재되어 있을 것

바. 농용고소작업차, 스피드스프레이어용 작업대 및 농용리프트는 아래 내용이 기대에 표시되어 있을 것

- 1) 작업범위 및 적재하중 초과 금지(농용리프트의 경우 리프트 위에서의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 포함)
- 2) 작업가능 경사각도 및 적재하중
- 3) 아우트리거 사용방법(아우트리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4) 작업대를 상승한 상태에서 점검할 시 낙하 및 상승방지 대책
- 5) 강풍 또는 연약지 및 고압전선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 시 경고
- 6) 작업대에서 보조대 또는 사다리 등의 사용금지
- 7) 적재물은 작업대 중앙에 실을 것
- 8) 공동 작업 시 주의사항
- 9) 안전띠의 사용(안전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10) 기대 개조금지

18. 취급성

가. 사용설명서는 “안전을 위해 사전에 읽어주세요” 라는 내용과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제품의 사진(그림), 성능, 기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 사용 전에 관한 사항

- 가) 기계조립에 관한 사항
- 나) 작업자의 건강상태 및 작업자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의복, 보호구착용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라) 기계기능에 맞지 않는 사용에 관한 사항
- 마) 도로교통법규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고장 등의 조치: 농기계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고장 등 경우의 표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고장차량 표지를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야간에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바) 제3자 특히 어린이에 관한 주의사항
- 사) 연료, 농약 등 사용하는 자재에 관한 사항
- 아) 기계운반에 관한 사항

- 자) 기체에 명시되어 있는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2) 작업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가) 안전사용에 대해 필요한 점검준비 및 방법
 - 3) 작업 중 주의에 관한 사항
 - 가) 기계의 바른 사용방법 및 자세에 대한 사항
 - 나) 작업자 이외 주변의 사람에 주의를 환기하는 사항
 - 4) 사용 후에 관한 사항
 - 가) 주요점검 개소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 나) 사용한 자재 등의 처리, 처분에 관한 사항
 - 다) 장기보관 시 주의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작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검, 수리에 관한 사항
 - 나) 기계에 대해 연락, 문의에 관한 사항(제품명칭, 형식,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 나. 사용설명서는 한글로 알기 쉽게 찍어져있고 사용용어는 표준어로 사용하여 하며 또한 한 개의 사용설명서에 2개 모델 이상의 설명을 할 경우에는 형식 및 사양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할 것

19. 기타

- 가. 배기관이 출구는 작업자에게 직접 배기가스가 닿지 않는 위치 및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보행형 기계, 보행운전이 가능한 기계 및 정치식 작업기계 중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 자주형 농업기계는 최고속도가 7km/h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작업기를 부착하여 승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15km/h 이하일 것
- 다. 방제용 기계의 급수펌프는 역류를 방지하는 구조일 것. 다만, 역류되지 않는 구조의 급수펌프는 제외한다.

라. 연료탱크 및 연료주입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1) 연료 잔량 확인이 가능한 구조일 것. 다만, 소형(연료탱크용량 10L 이하)의 경우 연료 주입구를 통하여 육안으로 잔량 확인이 가능한 구조(잔량 경고 장치 포함)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자주형 농업기계의 연료탱크 및 주입구는 운전실(캡형)내에 설치되지 않아야 하며 주입구는 지면이나 플랫폼으로부터의 높이가 1500mm 미만이어야 하고 주입구 또는 압력제한장치를 통해 작동 중 또는 30° 기울임 상태에서 연료가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질 것. 다만, 구조상 20cm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제외한다.

마.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피복되어 있고 배기장치, 연료장치, 가동부 또는 예리한 모서리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 기체에 확실히 고정되어 있을 것

바. 농업용 트랙터용 작업기 중 4각결속기, 모우어(전방부착형 제외)는 운반 중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체폭을 줄일 수 있는 축소장치가 있어야 하고 운반 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할 수 있을 것. 또한, 농업용 트랙터는 폭이 2.5m를 초과하는 경우 기대의 전체 폭을 표시하는 표지판(크기: 가로 30cm × 세로 10cm, 표시내용: 전폭(m))이 기체 후방에 부착되어 있을 것

사. 농용고소작업차는 작업대 지상고 2m 이상에서 전·후진 최고속도가 1km/h 이하이고, 적재하중(운전자 중량 75kg 포함) 적재 시 작업대의 하강속도는 0.3m/s 이하일 것

아. 공시기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다음 내용이 인쇄 또는 각인된 금속재질(엔진 제외)의 형식표지판이 본체 및 엔진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인쇄된 형식 표지판은 물에 젖은 면재질의 형겅으로 15초 동안 문지른 후 다시 석유에 젖은 형겅으로 15초 동안 문지른 뒤 30초 후에 표지에 있는 그림, 기호, 문자 등의 내용을 쉽게 판독할 수 있을 것

1) 본체

가) 기종, 형식명 및 규격

나) 제조번호

다) 제조자(상호, 주소, 전화번호),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및 상호

라) 공급자(상호, 주소, 전화번호)

2) 엔진

가) 기종 및 형식명

나) 정격출력 및 회전속도(kW/rpm)

다) 최대출력 및 회전속도(kW/rpm)

라) 제조번호

마) 제조자(상호, 주소, 전화번호), 수입품의 경우 제조국 및 상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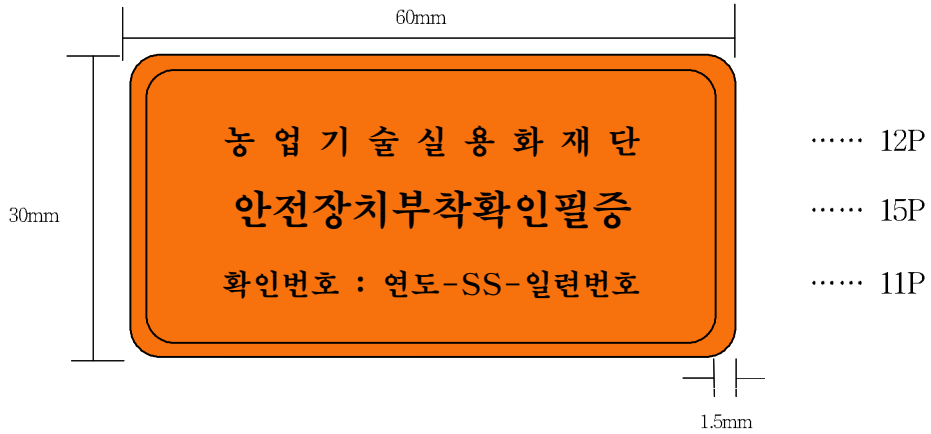
바) 공급자(상호, 주소, 전화번호)

자.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차. 안전검정 확인항목 이외에 안전방호의 필요가 있는 기종은 별도의 안전방호
대책이 있을 것

[별표 14]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확인 필증(제18조의6제3항 관련)



1. 재료: 테프론스티커
2. 색: 글씨 및 테두리(검정색), 바탕(주황색)
3. 기재사항: 해당 농업기계의 확인번호를 기재한다.
4. 글씨체: 견출명조체(KM)
5. 글씨크기: 위 견본에 표시된 급수(P)
6. 기타: 모서리는 둥글게 하여야 한다.

[별표 15]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시설 및 인력 기준(제18조의12 관련)

1. 검정 시설

- 가. 용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고, 그 면적은 옥외검정장, 포장시험장 및 검정대기장 등을 포함하여 1천6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실내검정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소규모 검정소의 용지는 3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나. 검정용 제품의 진입·진출로 및 주차장은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鋪裝)되어야 한다.
- 다. 검정대, 검정용 차량,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 장비 및 사무실은 수검자의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라. 검정대상 농업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검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품명	비고
1) 온도기록계	측정값을 연속 측정하여 그 측정 데이터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것
2) 항온항습챔버	설정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3) 난방성능시험장치	난방수의 온도 및 유량을 연속 측정하여 그 측정 데이터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것
	온풍의 온도 공기량을 연속 측정하여 그 온도 데이터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것
4) 풍량측정장치	풍동관, 덕트 등으로 풍량을 측정하는 것
5) 표준체	0.5mm부터 5mm까지의 눈금크기별로 구비할 것
6) 입자선별기	완전립, 찌라기, 책삭립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것
7) 압력·온도기록계	측정 데이터를 연속으로 기록·저장할 수 있는 것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검정장비	

2. 검정 인력

구분	기준
가. 책임검정원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는 10년, 4년제 대학 졸업자는 8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검정원으로 2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나. 검정원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는 5년,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검정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

[별표 16]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8조의16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3호	지정취소				

위반내용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라. 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4호	지정취소				
마. 법 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5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사.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아.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업무 일부 정지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의4 제1항제6호	지정취소				

4. 농업기계화 촉진법시행규칙 별지서식

- 별지 제 1 호서식(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 별지 제 1 호의2서식(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 별지 제 2 호서식(농업기계 검정 신청서)
- 별지 제 3 호서식(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 별지 제 3 호의2서식(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 별지 제 3 호의3서식(농업기계 검정 성적서)
- 별지 제 4 호서식(사본 발급신청서)
- 별지 제 5 호서식(증 표)
- 별지 제 6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서)
- 별지 제 7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 별지 제 8 호서식(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변경 확인 신청서)
- 별지 제 9 호서식(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 별지 제10호서식(시정명령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검정대행기관지정(재지정)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검정대행기관지정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검정 용도의 제품	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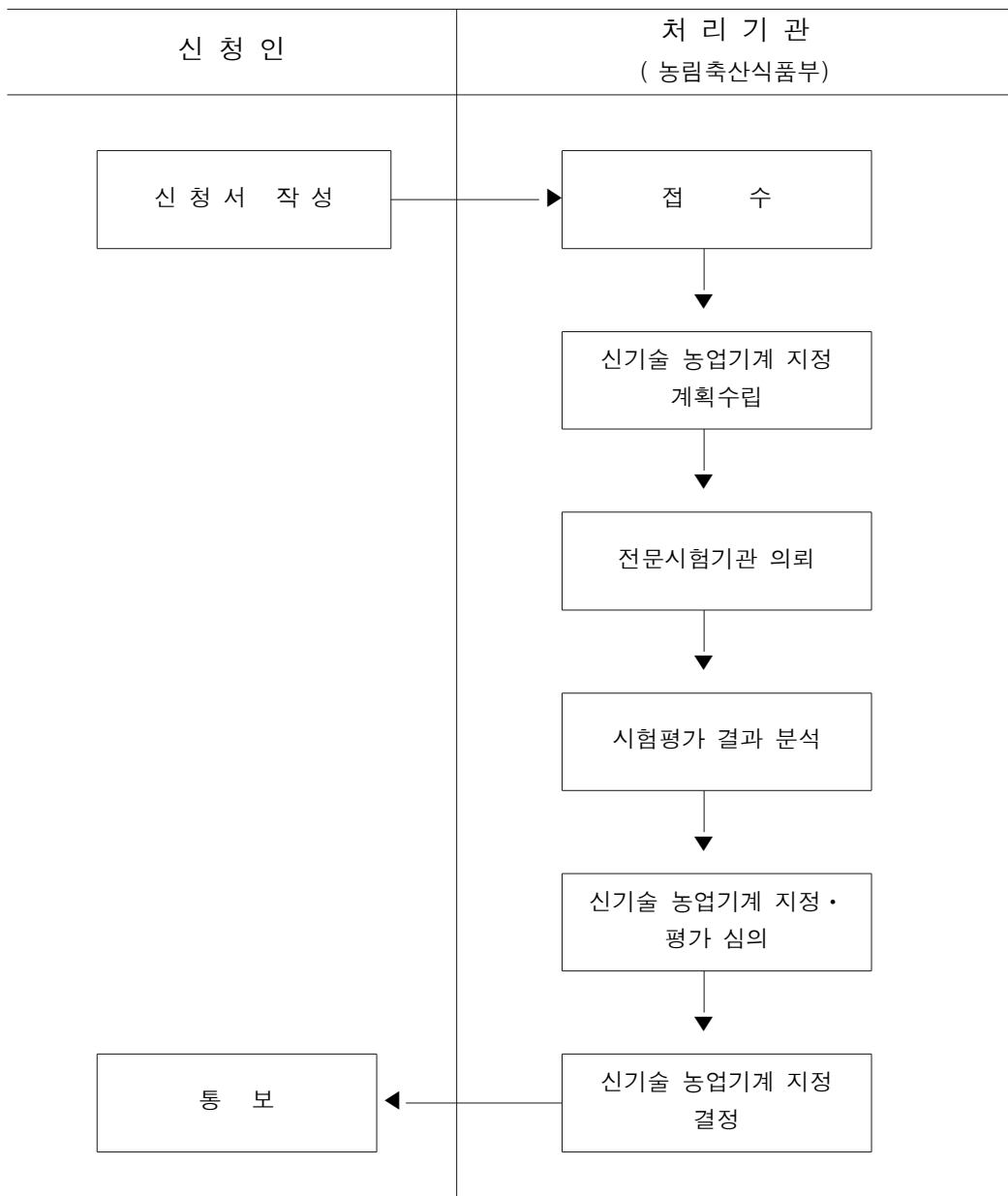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 분석서 1부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

1. 상호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신기술 농업기계의 명칭:
5. 지정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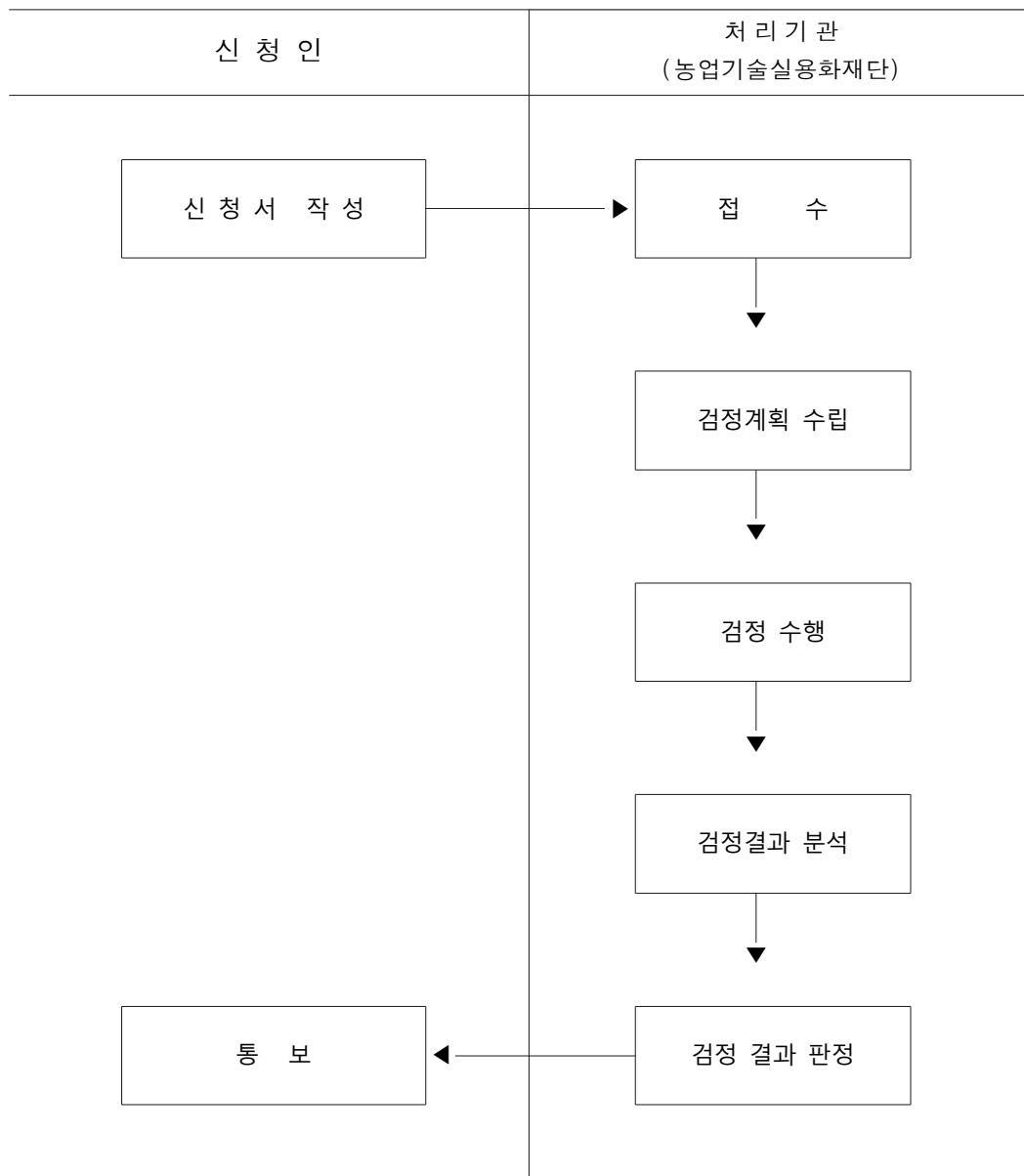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1. 신청인
 - 가. 성명:
 -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다. 주소:
 - 라. 상호:
2. 검정 용도의 제품
 - 가. 기종명:
 - 나. 형식명:
 - 다. 형식 및 규격:
3. 검정번호:
4. 검정성적: 붙임
5. 검정 결과 판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종합검정 성적입니다.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검정대행기관

직인

제 호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명: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소:

라. 상호:

농업기계 사진

2. 검정용도의 제품

가. 기종명:

나. 형식명:

다. 형식 및 규격:

3. 검정번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검정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검정대행기관

직인

제 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상 호:

2. 검정 용도의 제품

가. 기종명:

나. 형식명:

다. 형식 및 규격:

3. 검정번호:

4. 검정성적: 붙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검정 신청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성적입니다.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검정대행기관

직인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본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한글 3일 영문 7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		
검정(확인) 번호			
발급 신청 부수	한글: 부, 영문: 부		
사용 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8조의10)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성적서, 검정확인서, 안전장치 부착확인서)의 사본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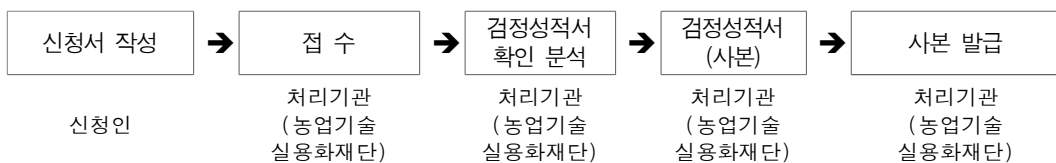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검정대행기관 귀하

작성방법	검정(확인)번호는 검정성적서 및 확인서 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앞 쪽)

제 호

농업기계조사원증

사 진

3cm × 4cm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농촌진흥청

55mm × 85mm (PET-G카드, 연노랑)

(뒤 쪽)

농업기계조사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18조의10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또는 안전
장치 부착 여부 등의 조사를 실시하는
농업기계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직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	
확인 용도의 제품	기 종 명	
	형 식 명	
	형식 및 규격	
	제조번호	
확인번호		
확인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	(년 월 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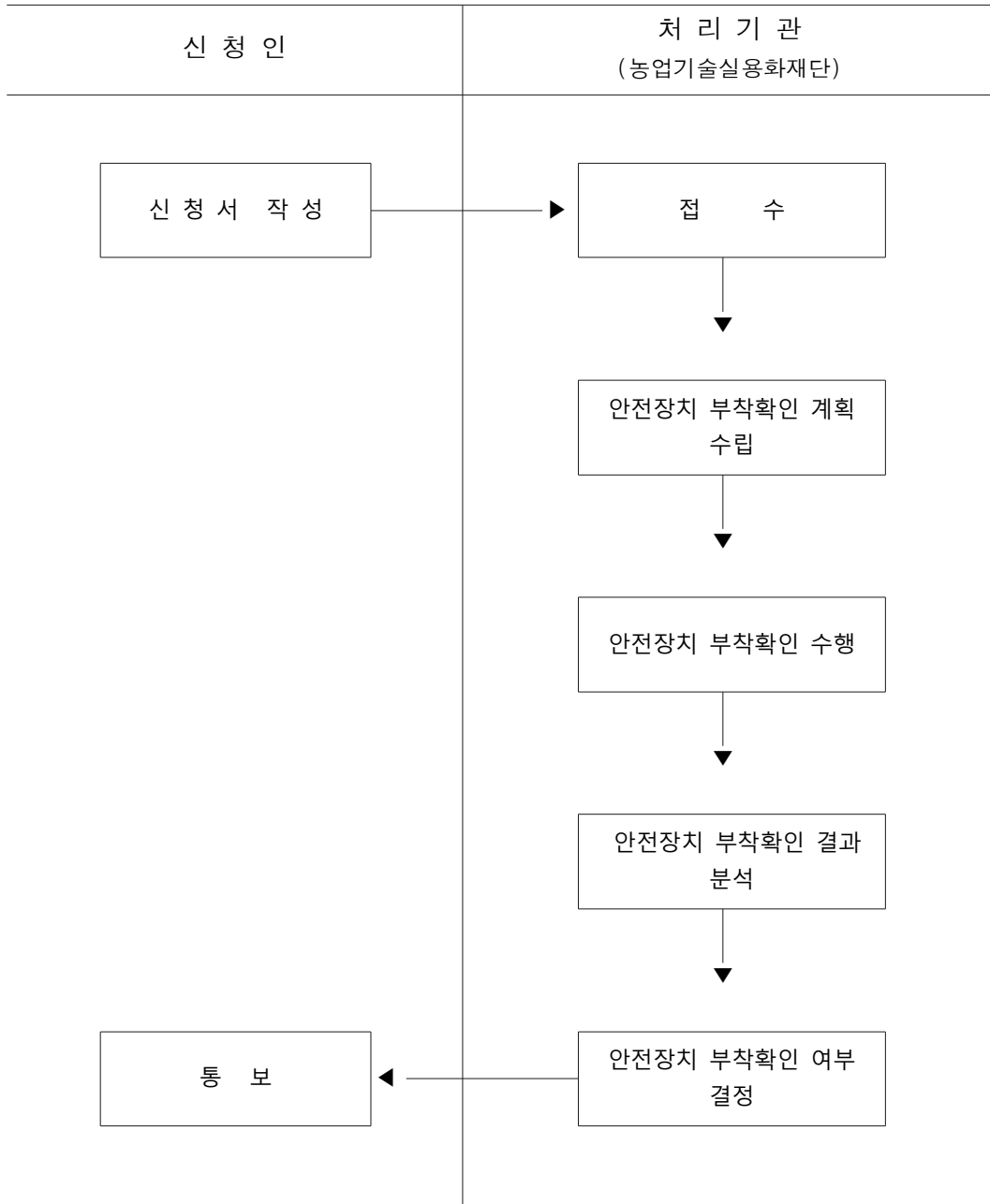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작성 방법

1. 확인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 확인 용도의 제품 제출 장소 및 날짜란은 확인 용도의 제품을 확인 시작 전까지 보관하기 어렵거나, 포장 또는 현장에서 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확인 용도의 제품을 별도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다. 주 소:

라. 상 호:

농업기계 사진

2. 확인용도의 제품

가. 기종명:

나. 형식명:

다. 형식 및 규격:

3. 확인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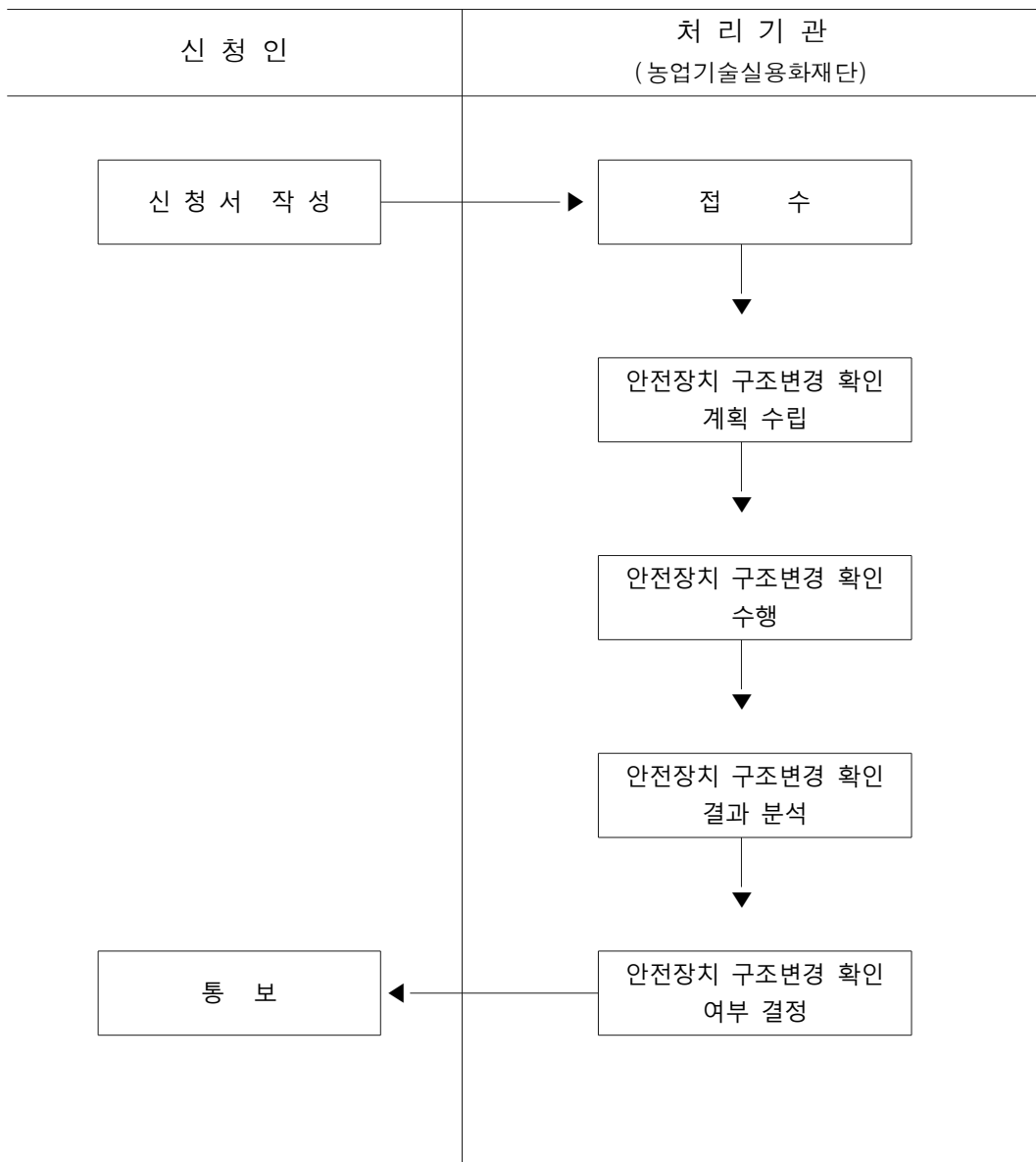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신청한 위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 관련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직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				
대상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상 농업 기계	기종명			
	형식명			
	형식 및 규격			
확인번호				
시정명령사항				
시정기간		년 월 일까지		
<p>「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 조의1 제1항에 따라 임의로 개조(변경)한 안전장치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 기간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농업과학원장 인</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											
성명	주소	농업 기계명	형식명	확인 번호	형식 및 규격	시정명령		시정 확인 결과			비고
						날짜	내용	날짜	내용	확인자	

297mm×210mm
(인쇄용지(2급) 60g/m²)

제 호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검정대상 농업기계:
5. 지정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따라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인

Ⅱ.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2-183호)

2012. 9.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정 제1995- 49호(1995. 7. 6)
개정 제1999- 21호(1999. 4.22)
개정 제2005- 3호(2005. 1.15)
개정 제2009-321호(2009. 9.15)
개정 제2012-183호(2012. 9. 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체제) ① 법 제4조에 따라 지원·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는 농업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이라 한다) 및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책임지고 실시한다.

② 대형농업기계(트랙터 및 콤바인) 제조업자 등은 대형 사후관리업소를 직접 설치 운영하며, 수리용부품의 공급 및 종합 수리·정비를 실시한다.

③ 대형, 중형, 소형 사후관리업자는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실시한다.

제3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 중앙회장은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조업자 등은 지원 공급되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업자에게 수리용부품의 생산·공급, 수리·정비 및 농업기계 사용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의 생산 또는 공급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사후관리업자의 관리)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후관리업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출필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폐업하고자 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폐업제출서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제출필증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후관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현황, 사후관리 실태 등을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은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규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한 사후관리업자와 폐업 또는 변경한 사후관리업자 명단을 반기말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처분기준

구 분	1 차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에 미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공급 및 사후 봉사 소홀 등으로 적기 영농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용부품·장비 확보 자금 지원 추천대상에서 제외 및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공급 등 유통 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 주) 1. 위반사항이 여러 항목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조치한다.
 2. 위반회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고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과 기한을 통보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제4호 서식에 기재 관리한다.
 4.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처분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중 형(), 소 형()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및 기술인력	작 업 장	소재지	(전화번호)
		규 모	m ²
	수 리 장 비	크레인(), 호이스트(), 체인블럭(), 리프트()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확 보(), 미 확 보()	
	기술인력	명(자격증 소지자 명, 경력소지자 명, 수리보조자 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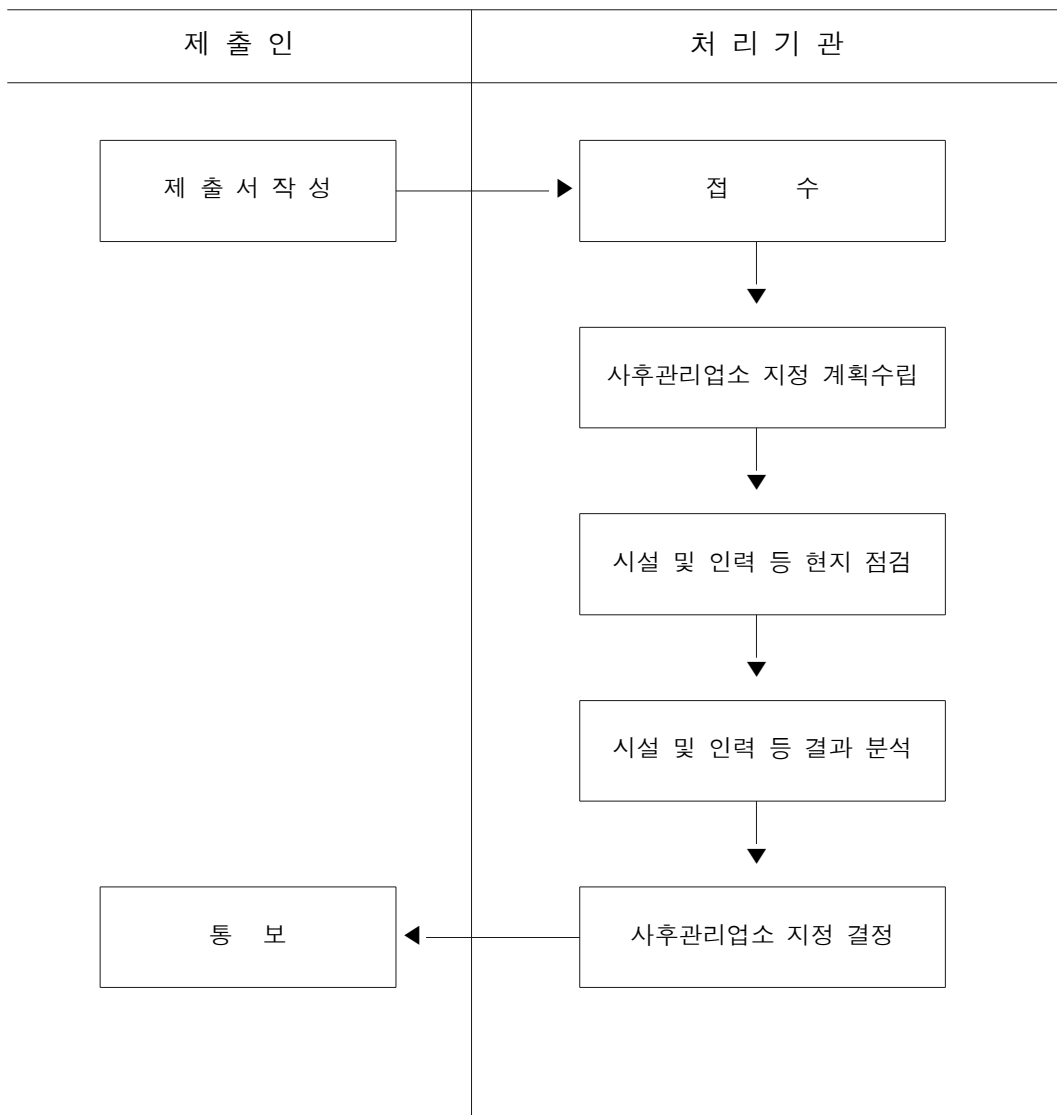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현황 1부. 2. 작업장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변경) 현황

1. 시설확보

가. 작업장

계	옥 내	옥 외	비 고
m ²	m ²	m ²	

나. 수리장비

장비명	규 격	수 량	비 고
		대	

다. 부품관리 전산화시스템

장비명	규 격	수 량	연계확인	비 고
		대		

※ 사후관리업소와 제조업체 및 부품센터와의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확인을 할 수 있는 부품관리 전산체계도 등 첨부

2. 기술인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 ① 구분란은 자격증소지자, 경력소지자 및 수리보조자로 표기
 ② 비고란은 자격증소지자는 국가기술자격명, 경력자는 수리경력 표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변경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명칭(상호)			
등 급			
작업장 소재지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변경 사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업소의 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변경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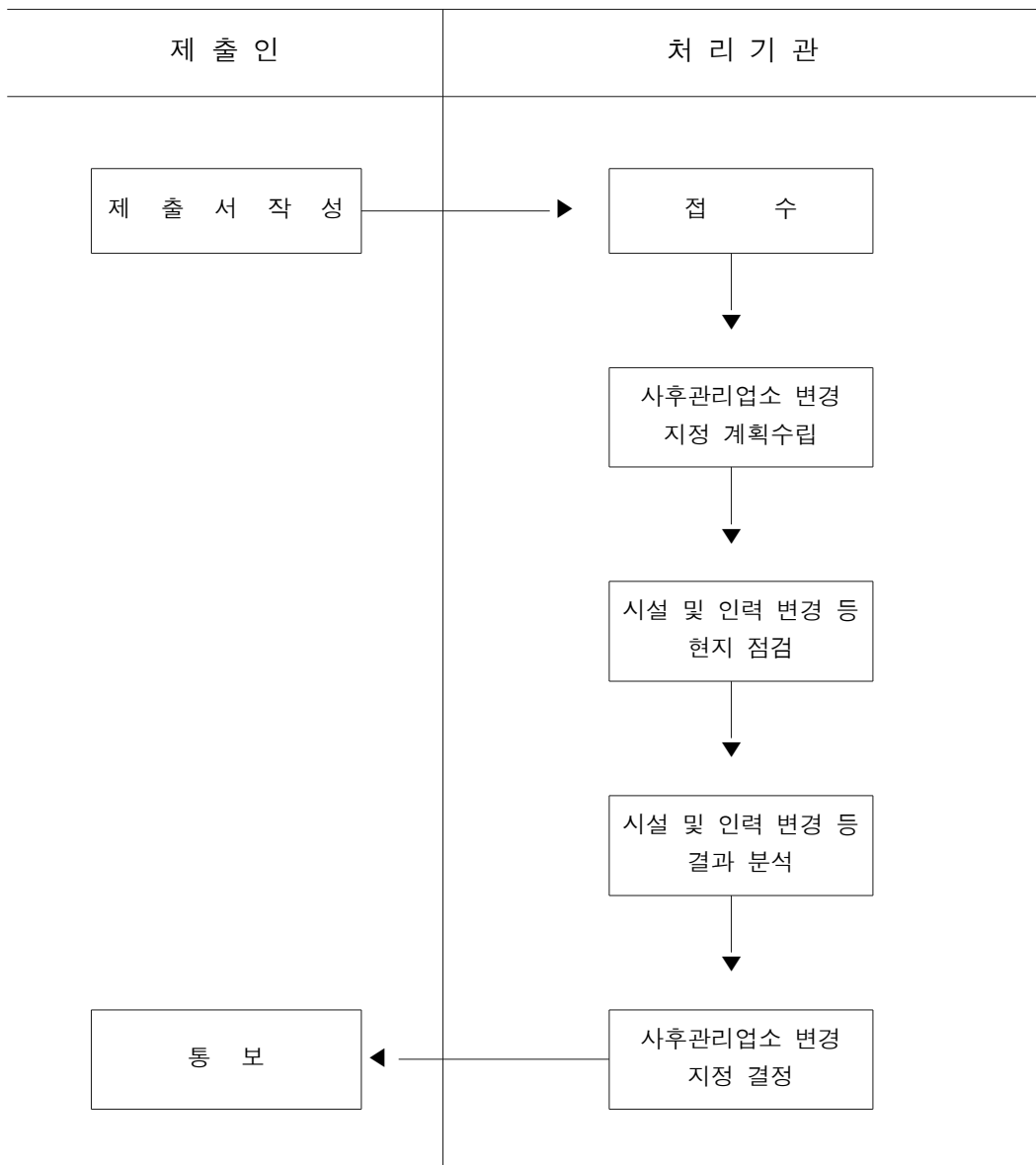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시설 및 기술인력 변경 현황 1부. 2. 작업장 소재지 변경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3. 인력기준 변경시 자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1. 사후관리업소의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4. 사후관리업소의 등급 :

위 업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한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명칭	소재지	대표자	사후관리 업소등급	작업장	수리 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확인		비고	
							계	자격증 소지자	경력 소지자	수리 보조자	일자		점검자
				m ²	대		명						

- ※ ① 사후관리업소별로 카드화하고, 확인일자별로 작업장, 수리장비, 전산화,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관리
 ② 수리장비 및 전산화는 해당등급 사후관리업소를 말하며, 전산화는 ○, ×로 표기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폐업제출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인 (대표자)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중 형(), 소 형()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작 업 장	명 칭 (상 호)		
	등 급	대 형(), 중 형(), 소 형()	
	소재지	전화번호	
폐 업 일			
사 유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지원 및 관리요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를 폐업하고자 폐업제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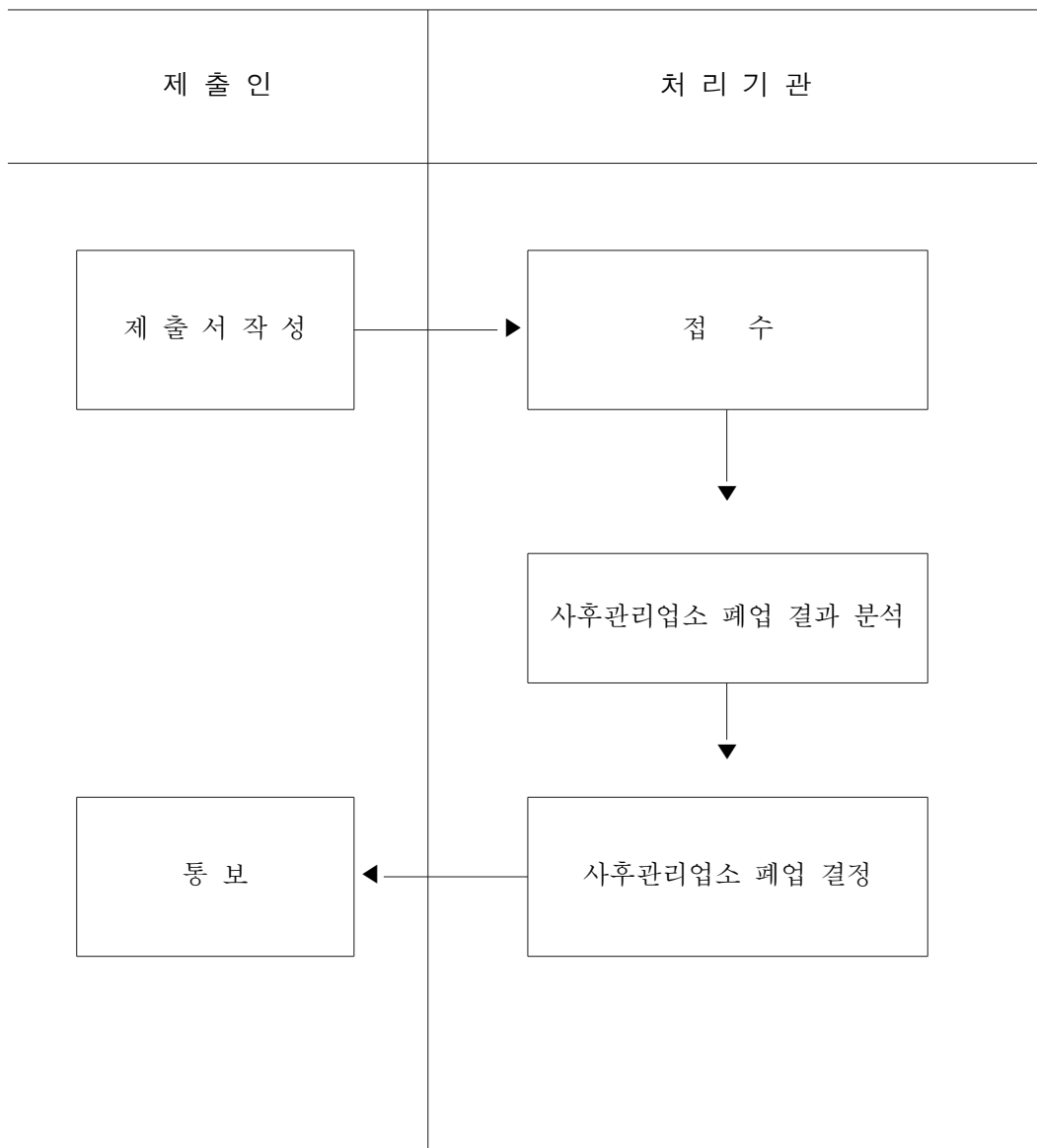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필증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Ⅲ.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307호)

2013. 12. 2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시정절차

제정 제1996- 56호(1996. 8.28)
개정 제2001- 56호(2001. 9. 5)
개정 제2009-322호(2009. 9.15)
개정 제2010-138호(2010.12.30)
개정 제2013-307호(2013.12.2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47조 내지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농업기계의 안전장치에 대한 결함정보의 보고, 결함 시정권고 및 결함 시정명령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결함정보의 보고) ①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장치의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가. 사망
 - 나. 신체의 일부 골절·절단·손상·화상·감전 등의 신체적 부상으로 3주일 이상 병원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안전장치의 구조에 위반되는 경우
- ② 제조(수입)업자는 공급한 농업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결함정보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해당 농업기계의 시정조치의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소속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직 등으로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이 중대한 결함사실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알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2013-147호('13.10.7)는 폐지한다.
-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28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결함정보 보고서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보고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 내용

가. 안전장치명칭

나. 세부결함 내용

다. 예상되는 피해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된 시점 및 경로

5. 농업인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인적사항 및 피해내용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합 시정계획서

1. 시정대상 농업기계

- 가. 명칭
- 나. 형식 및 규격
- 다. 공급기간(필요시 로트번호 병기)

2. 안전장치의 결합 시정사유

3. 결합의 시정방법

- 가. 시정방법(수리, 교환, 환불 등)
- 나. 시정책임자(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담당부서명 등)
- 다. 시정기간, 농업인이 방문할 장소, 영업시간 등

4. 농업인 주의사항

5. 이번 ○○의 결합시정은 농업인의 부담없이 무료로 실시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조치결과

1. 시정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안전장치명

2. 시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가. 시정방법 (수리, 교환, 환불등)

나. 시정실적

4.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농업기계에 대한 조치 계획

5. 재발방지 대책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서

1.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권고 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3. 안전장치의 결함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별지 제5호 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결함 시정권고 수락여부서

1.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

가. 명칭

나. 주소

2. 시정대상 농업기계

가. 명칭

나. 형식 및 규격

다. 공급기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IV.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72호)

2013. 10.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제정 제2012-292호(2012.12.13)

개정 제2013-272호(2013.10. 7)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 종합검정		
가. 농용엔진		이외의 기종은 유사 기종의 수수료를 적용함
1) 엔진배기량 1.5L 미만	481,000	
2) 엔진배기량 1.5L 이상 3.5L 이하	536,000	
3) 엔진배기량 3.5L 초과	563,000	
나. 동력경운기	870,000	
다. 관리기	1,330,000	
라. 농용트랙터		
1) 엔진배기량 1.5L 미만	2,290,000	
2) 엔진배기량 1.5L 이상 3.5L 이하	2,480,000	
3) 엔진배기량 3.5L 초과	2,640,000	
마. 농용로더	1,100,000	
바. 농용굴삭기	1,100,000	
사. 토양소독기	1,100,000	
아. 심토파쇄기	1,100,000	
자. 동력이앙기	1,410,000	
차. 동력이식기	1,000,000	
카. 동력파종기	1,000,000	
타. 비료살포기	374,000	
파. 동력제초기, 동력중경제초기	720,000	
하. 스피드스프레이어	1,270,000	
거. 콤팩트	1,650,000	
너. 땅속작물수확기	1,060,000	
더. 감자수확기	1,060,000	
러. 양파수확기	1,060,000	
머. 농산물건조기	907,000	
버. 곡물건조기	890,000	
서 농산물 비파괴선별기	750,000	
어. 농산물저온저장고	708,000	
저. 가정용도정기	460,000	
처. 콩정선기	460,000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커. 유류용난방기	360,000	
터. 고체용난방기	360,000	
피. 전기용난방기		
1) 발열체 소비전력 40 kW 미만	655,000	
2) 발열체 소비전력 40 kW 이상 80 kW 이하	1,250,000	
3) 발열체 소비전력 80 kW 초과	1,770,000	
허. 농용베일러	526,000	
고. 사료작물수확기	535,000	
노. 콩탈곡기	535,000	
도. 동력파쇄기	537,000	
로. 농용톱밥제조기	537,000	
모. 농용동력운반차	880,000	
보. 보호구조물(ROPS, FOPS)	653,000	
소. 기타 기종	360,000	

항 목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2. 기술지도검정			
가. 엔진성능시험	1항목	390,000	
나. PTO성능시험	1	329,000	
다. 견인성능시험	1	626,000	
라. 작업기승강장치 성능시험	1	503,000	
마. 벨트폴리 또는 벨트축 성능시험	1	504,000	
바. 고온하의 PTO성능시험	1	980,000	
사. 차축출력시험	1	1,070,000	
아. 선회시험	1	177,000	
자. 차외측소음시험	1	259,000	
차. 배기가스농도시험	1	730,000	
카. 중심위치측정시험	1	195,000	
타. 전도시험	1	233,000	
파. 브레이크성능시험(트랙터에 한함)	1	310,000	
파. 브레이크성능시험(트랙터외 기종)	1	212,000	
하. FOPS 강도시험	1	211,000	

항 목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거. 좌석벨트앵커리지시험	1	204,000	
너. 방수시험	1	233,000	
더. 분무성능시험	1	383,000	
러. 송풍성능시험	1	243,000	
머. 펌프성능시험	1	243,000	
버. 농산물비파괴선별기 성능시험	1	302,000	
서. 농산물저온저장고 성능시험	1	233,000	
어. ROPS 강도시험	1	322,000	
저. 콤바인 성능시험	1	248,000	
처. 이앙기 성능시험	1	229,000	
커. 이식기 성능시험	1	229,000	
터. 땅속작물수확기성능시험	1	229,000	
퍼. 로더 성능시험	1	419,000	
허. 굴삭기 성능시험	1	419,000	
고. 관리기 성능시험	1	210,000	
노. 고체연료(또는 유류)난방기 성능시험	1	245,000	
도. 전기난방기 성능시험	1	296,000	
로. 유류용 건조기 성능시험	1	471,000	
모. 전기용 건조기 성능시험	1	501,000	
보. 도정기 성능시험	1	265,000	
소. 토양소독기 성능시험	1	229,000	
오. 잔가지파쇄기 성능시험	1	229,000	
조. 톱밥제조기 성능시험	1	229,000	
초. 동력운반차 성능시험	1	343,000	
코. 가동시간계측기 성능시험	1	183,000	
토. 기타 기종의 일부시험항목(선회시험 기준)	1	177,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3. 국제규범검정			
가. OECD 농용트랙터표준코드 시험	대		- OECD에 시험성적 승인 비용은 별도임
1) 코드 2(필수시험에 한함)	1	2,400,000	
2) 코드 4, 7, 8	1	940,000	- 코드2에 2항의 일부 기술지도검정 항목이 선택시험 또는 보충 시험으로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 시험 수수료가 추가됨
3) 코드 5	1	1,190,000	
4) 코드 6	1	1,150,000	
5) 코드 9	1	1,260,000	
6) 코드 10	1	732,000	
7) 기존 검정성적의 변경 또는 기검정된 보호구조물(ROPS, FOPS)을 다른 트랙터에 확장적용	1건	344,000	
나. 기타 국제규범검정(ISO, ASAE 등)	1대 (항목)	동일기종 및 항목 의 수수료 적용	
4. 안전검정			
전기종	1대	225,000	개별 항목시험이 추가 되는 경우 기술지도검정 수수료 적용
5. 변경검정 등			
전기종	1대	54,000	서류 확인으로 실시하는 검정으로 개별 항목시험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기술지도검정 수수료 적용
6. 사후검정			
전기종	1건	해당기종의 종합 검정 수수료 적용	현장 사후검정의 경우 안전검정 수수료 및 출장비 등 실비 적용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7. 기타			
가. 명의등 변경신고	1건	10,000	
나. 성적서 사본발급			
1) 국문	1건	10,000	
2) 영문	1페이지	5,000	

<주>

- (1) 농업기계 검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현장 출장시험이 필요한 경우 출장경비는 별도로 한다.
- (2) 농업기계 검정수수료 납부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3) 납부된 농업기계 검정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정항목의 생략 또는 검정신청서를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를 시행한 날부터 국립농업과학원고시 제 2010-1호(2010.2.2)는 폐지한다.
- ③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V. 소비자분쟁해결기준(농업용기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 12. 28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제정	경제기획원	고시	제85- 7호	1985.12.31
개정	경제기획원	고시	제89- 4호	1989. 7.14
	경제기획원	고시	제93- 2호	1993. 3.25
	경제기획원	고시	제94- 4호	1994. 7.16
	재정경제원	고시	제96- 3호	1996. 4. 1
	재정경제부	고시	제99- 7호	1999. 3.13
	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	1999. 7.19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2000.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2001.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2002.12.3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2004.11.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2005.10.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	2006.10.16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	2007.10.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3호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8호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 1호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2011.12.28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 3 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I]

대 상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9. 공산품	○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꽃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별표 II]

품 목 별 보 상 기 준

9. 공산품

품 종	분 쟁 유 형	해결기준	비 고
○농업용 기계 ○어업용 기계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및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 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 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중)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0 이면 0으로 계산) - 피해배상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 소비자의 현품운송 거부 · 현품운송공란 또는 운송비 과다 · 농번기 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농업용 자재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축 산 자 재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별표 III]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 500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9~14년 농업용기기에 따라 내용연수 포함하여 4년까지 생산·공급, 다만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부품 사용 가능
2) 어업용기기	○ 1년	

[별표 IV]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 목	내용연수
○ 농업용기기	14년
○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5년

농업기계화 촉진법령

2014년 3월 일 인쇄
2014년 3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산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 화 : 044 - 201 - 1840~1
팩 스 : 044 - 868 - 0734
<http://www.mafra.go.kr>

인 쇄 : 한 라 기 획
전 화 : 044 - 868 - 7334~5
팩 스 : 044 - 868 - 7336
E-mail : hanra503@naver.com